#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진휼제도
- 2. 의료제도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옛부터 災害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水災・旱災・風災・虫災・火災・疾疫 등 자연적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기가 어려웠다. 그 실태를 보면 대체로 수재에는 풍재가 겹쳐 일어나고, 한재에는 충재가 뒤따랐다. 그리고 화재는 일부 지방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운 편이고, 질역은 많은 사망자를 내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제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재나 한재같은 자연적 재해는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凶荒과 飢饉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방정식처럼 되어 왔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민을 발생케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에 힘입어 구제되었다. 그러나 흉황이 너무심해서 기민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각 지역을 떠도는 거지[丐乞] 신세가 되거나 일부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부황이 나서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조선 초기의 자연재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세종 때에 발생한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1) 우선 세종 때

<sup>1)</sup> 이 글은 金鎭鳳의〈賑恤制度〉(《서울六百年史》1, 1977) 및〈朝鮮 世宗朝의 賑恤政策에 관한 연구 I·Ⅱ〉(《論文集》17·19, 忠北大, 1979·1980)를 참고

에 발생한 재해 종류와 피해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세종대의 재해 상황

시 기	재 해	재 해 지 역
즉위년 (1418)	수 재	江原・咸吉・平安・黃海・慶尚・京畿
	한 재	忠清
2년 (1420)	한 재	全羅
3년 (1421)	수 재	江原・漢城
4년 (1422)	한 재	忠淸・江原・京畿・全羅・平安・黃海・咸吉・慶尙
5년 (1423)	한 재	咸吉・平安・慶尚・江原・京畿・忠清・黄海・開域
10년 (1428)	수 재	咸吉
	화 재	江原
18년 (1436)	한 재	京畿・忠淸・慶尚・全羅・江原
19년 (1437)	수 재	慶尙
29년 (1447)	수 재	平安
	충 재	平安・忠淸・黃海・咸吉・全羅・京畿・開城
	여 역	漢域 및 諸道

위의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해마다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 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피해 상황은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또 는 전국적이냐 지역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수재와 한재가 발생하면 대개는 秋穀(米豆類)이 익지 않기 때문에다음해 봄에 기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실제로 세종 즉위년(1418)에 발생한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그 이듬해 발생한 기민은 186,000여명이었다.2) 그 가운데 특히 한재가 발생했던 충청도의 기민은 전체 기민의60%가 넘는 120,249명으로 중부지방 수재지역인 경기・황해・강원도의 기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도의 주를 달지 않았다.

<sup>2)</sup> 이 기민의 수는 세종 원년 중부지방 4개도 즉 충청·경기·황해·강원도에서 발생한 기민의 수로, 같은 세종 즉위년 재해지역인 경상·함길·평안도의 기 민 수는 사료의 부재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 원년 전국의 기민은 186,000여 명보다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민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한재가 수재보다 그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추 측할 수 있다.

또 세종 4년(1422) 재해지역 가운데 강원·경기·황해·평안도 기민의 수는 약 59,000명이었다. 이 해의 재해는 한재이고 전국 8개도가 모두 피해 지역이었으나 주로 夏穀(麥類)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추곡 때의 그것보다는 피해가 가벼웠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기민 수의 조사 시기도 예년의 春期와 달리 秋期인 7~9월이다.

## (2) 일반대책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황이 들면 賑貸・賑恤・施食・救療・喪葬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수 후에 환납할 수 있는 것이고,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鹽醬・衣布 등을 가지고 진제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시식은 기아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밥이나 죽을 먹여 응급・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료는 기아로 말미암은 노약자나 질병자를 모아서 치료하는 것이며, 상장은 연고 없는 사망자를 국가에서 직접 매장해 주는 것이다.

## 가. 진 대

원래「賑」은 흉황일 때 기민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貸」는 농민에게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왕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 국초부터 호조의 版籍司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대종 17년(1417)전국의 대여곡은 米·雜穀이 82만석이었는데3) 세종 5년 (1423)에는 진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義倉穀을 보첨케 하고 朱子社倉粍 米法에 따라 대여곡 1석에 3승의 耗를 보태어 수납케 했으며 5월까지의 진 대곡은 총 409,000여 석이었으나 연속되는 재해로 이 1년간의 전국 還上 (米·豆·雜穀)의 분급 총수량은 1,198,589석이라 하였으니4) 막대한 수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세종 27년(1445)의 기민 호수는 총 217,000

<sup>3) 《</sup>太宗實錄》 권 34, 태종 17년 7월 계유 右代言 河演上書.

<sup>4) 《</sup>世宗實錄》 권 23, 세종 6년 3월 경진 戶曹啓.

호에 진대곡은 2,738,000석이었다.

이처럼 의창곡은 해마다 증가되지만 일단 빈민에게 대여된 곡물은 환수되지 않고, 진대해야 할 수량은 점차 늘어나서 조정에서는 그 대책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휼과 진대의 방법을 구별해서 등급 밖의 빈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대하기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종 30년에도 진대한 곡물은 환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대곡의 청구는 증가하였으므로, 호조에서는 이를 사정해서 대여하였다. 이렇게해서 진대곡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에 軍資穀은 감축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종래의 진대 상황을 정밀 조사하여 기본곡을 義倉에 가급하고, 지방관에게 그 책임을 지워 매월 진대 상황 및 그 수량을 호조에 보고케 하며, 만약 태만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죄를 묻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창곡의 가급문제는 후에도 간혹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세종 때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볼 수가 없다.5)

## 나. 진 휼

진휼은 식량을 주로 하고 염·장·의·포 등의 현물이나 혹은 돈을 지급하며 기민의 급박한 기아상태를 해제하는 것이다. 세종 원년에는 흉황과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수령이 전심으로 진휼해야 하므로, 각 도의 관찰사와 수령관이 분담해 검찰한 결과를 매월 말 조정에 보고케 하여 그것으로 상벌의 기준을 삼도록 했으며, 또 조정의 관리를 파견·조사하여 단 한 사람의 기사자가 발견되어도 무거운 죄로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국왕의 유시는 세종시대에만도 수시로 내려졌다.

세종 원년 5월에는 중부지방 4개 도의 기민 수, 진휼곡 수, 진휼장 수가 보고되고 있는데 충청·경기·황해·강원도의 기민 수는 186,000여 명에 진 휼곡은 약 15,000석, 진휼장 수는 1,616석이었다.

기민의 진휼 기한은 새 곡물이 익어 기아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기민 1인에게 1일간 지급되는 진휼곡의 수 량은 일정하지 않았다. 세종 6년 정월에 시행된 강원도 각 관 기민의 진제

<sup>5) 《</sup>世宗實錄》 권 120, 세종 30년 4월 정축.

규식에는, 15세 이상은 1일에 米 4홉·豆 3홉·■ 3홉, 11세~15세는 미 2홉·두 2홉·장 0.5홉, 2세~10세는 미 2홉·장 0.5홉씩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다른 도에서도 이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진휼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위해서 각 도에 賑濟敬差官을 분견하였는데, 세종 4년에는 전국에 12명의 朝官을, 5년에는 4명, 16년에는 5명, 17년에는 4명, 27년에는 1명의 경차관을 내보내어 진휼사업을 독려하게 하였다.

조정에서 세종 27년 2월 경기도 경차관에게 내린 賑恤事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민 중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관아에 나와 환자[還上]를 직접 받아갈 수 없는 사람은 가져다 줄 것, ②수령이 앞서 환자를 虛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진제할 때 그 수량을 줄이는가를 상세히 살필 것, ③봄철이니 모자라는 진제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채 등을 많이 캐어 섞어 먹도록 할 것, ④여러 날 굶주린 사람에게 漿水를 마시게 하면 즉사하므로, 먼저粥水를 식혀서 천천히 먹여 허기를 면하게 한 뒤에 밥을 줄 것, ⑤ 飢流民은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진제장을 설치 구휼하고, 농사철이 되면 각기 원적지로 돌려보낼 것, ⑥행정구역상 본관과 거리가 먼 곳의 기민은 가까운 고을에 나가 진제미를 받아가게 할 것, ⑦깊은 산골과 외떨어진 곳의 기민을 먼저 고찰할 것, ⑧ 진휼사업에 진력하지 않는 監考・色掌은 즉시 論決하고, 수령은 보고한 뒤에 죄를 줄 것 등이었다.

한편 흉황과는 다른 인위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진휼대책을 세웠다. 세종 11년 3월 도성의 가옥 40여 호가 화재를 입었을 때, 또 17년 정월 강 원도 강릉부의 민가가 화재를 당했을 때에도 각각 진휼곡을 지급하였다.

#### 다. 시 식

기류민에게는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특별 구급책인 施食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세종대에는 기류민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關津의 요로에 파수인을 세우기도 하고, 각 고을에 방호소를 설치해 이를 막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었는 한 근절될 수는 없었다.

세종 4년(1422) 12월 失農州郡에는 모두 진제장을 설치케 하였다. 그런데이 해에는 북부 4개도에 기근이 심해서 풍년이 든 전라·경상도에 流移하는 자가 많았지만 조정에서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기사자는 적었다. 동 19년 정월에는 중·남부 5개도에 기류민이 발생하여 각 도마다 두 세 곳에 진제장을 설치해서 관찰사의 책임 아래 구제케 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특히 충청도의 심한 기근을 우려해서 都巡問賑恤使와 종사 관을 임명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흘사목을 지시하였다. ①기근이 심한지방에 진제장을 따로 설치해서 米粥・黃角・菜藿등의 물자를 지급하고, 식견이 있는 자나 승도를 뽑아 그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기류민의 동사를 막기 위해 土字를 설치하고 衣單者・老幼者・病者 등을 입거시켜 구료한다. ③유이민의 집을 부수거나 그들의 밀・보리를 뽑지 못하도록 이웃 마을에 看守 금지케 한다. ④凍餒者・餓死者를 즉시 보고치 않는 감고・색장은 죄를 주고, 제대로 구료치 않아 죽게 한 수령은 죄를 물어 降職還任하되 구황에 공이 있는 자는 加資한다. ⑤구황이 절박한데 조건이 미진하면 우선 편의대로 시행하고 보고한다는 등이었다.

세종 24년 정월에는 황해도에, 이듬해 정월에는 강원도 橫西 각 관에 진제장을 설치 운영케 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북부 4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진제장에 토우를 지어 溫暖에 힘써서 동뇌를 막게 하였다.6)

한편 세종 5년 3월에는 城底 10리의 비농민과 각 도 移來飢民 270명을 진제했으며, 동 17년 4월에는 경중 5부와 성저 10리의 식량이 떨어진 사람과 기류민을 동서확인원으로 보내어 구휼케 하였다. 이듬해 가을에는 각 지방기류민 1,000여 명을 수용키 위해 普濟院・利泰院에 진제장을 설치했으며, 한성부 낭청 3인을 뽑아 업무를 분장시켰다.

세종 5년 10월, 전국적인 흉황으로 풍년이 든 전라도에는 각 도에서 많은 기민이 모여 들었는데, 다른 도의 기류민 수를 집계해 보면 충청도가 가장 많은 2,394명이고 다음 경상도 1,455명, 강원도 1,000여 명의 순서로 전체약 5,800여 명이다.

<sup>6) 《</sup>世宗實錄》 권 102, 세종 25년 12월 갑오.

다음으로는 기류민의 棄兒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4년 11월에는 수령과 驛丞에게 명해서 기아를 직접 감독하여 기르게 했으며, 동 17년 9월에는 기아의 부모를 推鞠하는 한편 사실을 보고치 않은 관리도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또 동 18년 · 19년 · 26년에도 기류민이 버린 각 지방의 기아를 里正의 책임으로 부양자를 정해 주게 하고, 관청에서는 그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지급케 하였다.

그런데 각 진제장의 급식 때, 허기진 기민이 뜨거운 죽을 급하게 퍼먹고 몇 발자국을 걷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죽는 일이 많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중국의「何長者救飢法」을 채택하여 기민의 사망을 막고자 했다.「하장자구기법」이란 원나라 사람 何敬德이 大德 11년(1307) 杭州의 기민들을 구제하였던 방법인데, 그는 이웃의 기민들이 관청에서 끓여 주는 뜨거운 죽을 급히 먹고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전날 밤에미리 죽을 쑤어 큰 독에 담아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그 식은 죽을 기민에게 먹였더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 라. 구 료

敎療란 질병에 걸린 백성을 맡아 치료하는 것이다. 한성부에는 서민층의 구료기관으로 活人院이 있는데 기근이 심한 해일수록 그 활동이 활발해지기 마련이었다.

세종 17년 8월에는 동서활인원에 병자가 많아 기민이 安接할 수가 없으므로 근처에 다른 처소를 만들어 혼잡을 피하게 했으며, 9월에는 경중의 노비 중 병자와 경외 거지를 모두 활인원에 수용 구료케 하였다. 또 같은 왕19년 2월에는 보제원·이태원 진제장의 기민 중 질병자를 모두 활인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진제장 관리자는 기민이 조금만 아파도 곧 활인원으로 보냈으나 활인원에서는 질병자가 너무 많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는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진제장 곁에 임시로 띳집을 지어 기병자를 옮겨 놓고서, 巫女 등으로 하여금 전심 구료케 하였다.

세종 26년(1444) 3월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기류민을 모두

<sup>7) 《</sup>世宗實錄》 권 84, 세종 21년 3월 병인 議政府據戶曹呈啓.

한곳에 모이게 하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서활인원과 진제장에 분산시켜 진제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 놓고 한성부 낭청과 5부 관 리로 하여금 나누어 구료케 하였다.8)

한편 세종 4년에는 都城赴役軍人의 경우 귀로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과 역승은 그 경내의 병든 군인을 藥餌・粥飯으로 구료케 하거나, 病屋 10여 칸을 짓고 승도로 하여금 약이・염장・죽미를 지급해 구료케 하였다.

이와는 달리 동 11년 4월에는 각 도의 열병에 걸린 민호는 그 수령의 책임 아래 醫生과 巫覡에게 구료케 하고, 활인원의 예에 따라 1일에 미 1되를 지급케 하였다. 마찬가지로 동 21년 2월 황해도의 질병자 238명에게도 약제를 보내어 구료케 하였다.

## 마. 상 장

喪葬은 연고자 없는 사망자나 기아와 질병으로 죽은 빈민의 시체를 국가에서 매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태종 10년(1410) 4월 司諫院의 건의에 따라 도성의 시체를 매장하는 문제가 결정 시행되었다. 그것은 埋置院이란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죽은 사람의집 근처 10가가 시체를 매장하고, 그 경비는 주인이나 혹은 10가가 공동 부담하며, 이에 협력치 않는 사람은 조사 적발해서 죄를 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 무렵 한성부내에서 시체를 길거리나 혹은 溝巷에 내다 버리기 때문에 왕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다.9)

세종 17년 9월, 국왕은 예조와 한성부에 명해서 활인원에서 구료 중 사망한 경중 노비는 그 본가에서 관을 마련해 매장하고, 경외 기류민은 관을 관급해서 매장한 다음 표목을 세우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뒷날의 증빙으로 삼게 하였다. 또 동 19년 2월에도 활인원의 기민 병사자는 모두 관을 관급해서 매장케 하였다.

한편 기사자나 병사자뿐만 아니라 수재나 화재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정

<sup>8) 《</sup>世宗實錄》권 103. 세종 26년 3월 병인 · 무술.

<sup>9) 《</sup>太宗實錄》 권 19, 태종 10년 4월 갑진.

상에 따라 진제하였다. 세종 3년 6월, 큰 비로 도성의 민가 75호가 漂沒하고 익사자가 많이 발생하자 왕은 호조에 명하여 그 부모처자에게 부의를 내려주었다. 이듬해 5월에는 평안도 博川·嘉山·定州 등지의 큰 수재로 표몰한 민가에 곡식을 내려주어 진휼케 하였다.

그리고 동 13년 정월 국왕은 濟州를 왕래하다가 익사한 자에 대한 致賻法이 없음을 알고 그 입법을 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16년 3월에는「外方掩骼埋胔糾察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드러난 雜骨은 각 관수령이 差人으로 하여금 수습 매장한 다음 표목을 세우게 했으며, 그 결과를 매월 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엄격하게 고찰한 뒤 연말마다 예조에 보고하게 하였다.

## (3) 특별대책

국가에서는 진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례적인 일반대책 외에 응급적인 특별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다. 그것은 곧 糧穀節約·賑穀補充·勞役中斷·救 荒食物備蓄 등이었다.

첫째, 양곡 절약은 일상 생활에 긴요하지 않은 소비나 경비의 지출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는 금주, 연회의 停罷, 또는 녹봉의 감 소가 있다.

조선 초기의 금주령 실시상황을 보면, 정종대 1년·태종대 9년·세종대 6년·세조대 1년 및 성종대 3년으로 모두 20년동안 실시되었다.10)

금주령의 내용은 흉황으로 기민이 발생하면 궁내의 供上 祭享과 빈객용 외에는 공사의 술 사용을 금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막대한 양의 곡물이 절 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종 즉위년(1418) 9월에는 외방에 신설한 敎導의 廩給을 정파하였다. 동 19년(1437) 정월에는 관료의 봉록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1~2품은 減豆 3석, 3~6품은 減豆 2석, 7품 이하는 減豆 1석이며 綿紬(明紬)・正布・銅鐵 등은 모두 감하였다.

<sup>10)</sup> 이 통계는《朝鮮王朝實錄》태조~성종기사를 조사한 결과이다.

둘째, 진곡 보충의 방법으로 세종 19년 정월, 국왕은 승지들과 과전의 감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晋陽大君 瑈 등 대군의 과전 300결 중 50결을 감하고, 駙馬 延昌君 安孟聃의 과전 250결 중 30결을 감축케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대군의 과전은 250결, 제군의 과전은 180결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관곡이 부족해 부호의 私蓄 잡곡 11,000석 이상 자는 1년 용도 외의 것은 본관의 分貸例에 따라 환자로 분급하고 풍년을 기다려 수령이 독려 수납해서 私穀主人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근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의 한 방안으로 예조의 진언에 따라 기민 친족의 적극적인 救賑을 촉구하는 공문을 중외에 보내어, 친족간에 기근자가 있을 때 구제치 않는 자는 그 죄를 묻고 반면 적극적으로 진제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게 하였다.

셋째, 노역 중단은 위의 두 가지 대책처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특별대책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세종 5년(1423) 2월, 황해도내 실농한 각관의 各司 良隷・補充軍・別軍・螺匠・守公 등은 早穀(麥類)이 익을 때까지 입번을 면제하여 주었다. 동 17년 2월에도 역시 황해도 지방의 기근으로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하여 京役人을 돌려보냈다. 동 19년 정월에는 전국적으로 흉황이 심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 영선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동 26년 윤 7월, 흉황이 심한 경기・충청・황해도 각 관의 齋郎・樂工・武工 등을 4번으로 나누어 1번을 쉬게 하였다.

한편 세종 5년 9월, 평안도내 기근이 심한 각관의 향교 생도들을 이듬해 추수 때까지 방학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는 경기·황해도의 실농지역 향교 생도들은 조곡이 익을 때까지 방학하게 하고, 그 교관도 본가로 돌려보냈다. 또 동 21년 10월에는 충청도 실농 각 관의 향교 생도들도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넷째, 구황식물 비축은 흉황이 심해서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시 논의 시행된 방안이었다. 조정에서는 심각한 기근에 대비키 위해 곡물이 아닌 식 물(植物 중 可食物)을 채취해 비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종 원년 8월부터 전국적인 발생한 한재·풍수재에 대비해서 橡實(상수리와 도토리)·黃角(청각과에 속하며 빛깔이 누런 해초)·豆藿(팥잎·콩잎)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초 목·뿌리·꽃잎·해초 등을 각 지방의 손실경차관으로 하여금 예축케 하였다.

세종 16년 2월, 경상도 진제경차관은 구황식물로는 상실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소나무껍질이므로 소나무의 금벌령을 완화해서 기민을 구제하자고 건의하였다. 동 18년 12월에는 倭通事 尹仁甫와 尹仁紹가 구황방안으로 일본인이 상식하는 葛根(칡뿌리)과 蘇根(고사리)을 구황식물로 사용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니 이에 국왕은 윤인보를 경상도, 윤인소를 전라・충청도에 각각 파견해 그 채취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세종 6년 8월에는 구황식물로 大戶는 60석, 中戶는 40석, 小戶는 20석, 殘戶는 10석으로 정수를 규정하되, 상실을 우선적으로 비축케 하였다. 또한 동 16년 4월 왕은 외방의 각 관에서는 풍년이나 흉년을 가리지 않고 구황식물을 다량 비축함으로써, 민력의 노고가 큰 반면에 그 식물은 못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호조에 명하여 앞으로는 흉황의 정도에 맞추어 적절한 수량을 채취·비축케 하였다.

한편 세종은「經驗賑濟方」을 실농한 각도에 두루 유시케 하였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효과적인 구황방법인데, 그 내용은 苦梗末 1수저·雜菜 1줌·장과 소금 각 1수저를 섞어 끓이면, 이것으로 1인의 기근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구황식물로 동 18년 윤 6월에는 菁根(무)의 栽植을 권장하고 있다. 국왕은 "청근이 구황에 크게 유리하여 옛 사람이 이르기를 1畝를 심어서 1,000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근거없는 말이겠는 가"라고 하면서 그 재식 방안을 의논해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관의 수령에게 명하여, 무를 심는 것이 구황에 크게 이롭다는 점을 농민에게 적극 권유해서, 봄에는 그 씨를 채취케 하고, 가을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심게 하는 것을 항규로 정하였다.11)

<sup>11) 《</sup>世宗實錄》 권 73. 세종 18년 윤 6월 계사.

## 2) 진휼기구

조선시대의 진휼기구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倉制, 즉 곡물을 저장 보관하면서 기민을 구제하는 곳이요, 다른 하나는 救療所, 즉 질병자를 치료하고 병사자를 매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구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설기구 또는 임시기구로 구분된다.

진휼기구로서의 창제는 常平倉・義倉・社倉이 있다. 상평창은 한성과 일부시가지에 설치 운영되었고, 의창은 지방 각 관에 설치된 읍창이며, 사창은 각 마을에 설치되어 의창의 보급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들 3창은 필요할 때만 사무를 보고 평상시에는 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청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 주요 관원은 대개가 겸직이었다.

백성을 구료하는 기구로는 惠民署와 活人署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기민의 질병을 전담 치료하는 곳이 활인서였다. 그 밖에 救荒廳은 진휼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賑濟場은 기민·거지 중에서 구급을 요하는 사람을 먹여 주는 임시기구였다.

## (1) 구황청

조선시대에 기민의 구제사업을 맡아 보던 기구로서 상평창곡과 의창곡을 관장하였다. 태종 5년(1405)에는 이 사업을 호조에서 관장케 했으며, 세종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구황청이란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중종 때에 와서는 賑恤廳으로 개칭되었다.

## (2) 상평창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세조 3년(1457)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경기 5站의 供需를 전관케 하였다. 관원은 郞廳 1인을 蔭官으로 임명하였다. 《經國大典》에 "경외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물이 귀하면 값을 올려 포를 사들이고, 곡물이 천하면 값을 내려 포를 내어다 판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상평창의 설치 운영은 물가조절이 주목적이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진휼사업에 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평창의 활용은 한성과 그 밖의 몇몇 도시에 그쳤고, 전국적인 규모로 널리 설립·운영되지 못하였다. 중종 때에 진휼청이 설치되어 많은 資穀이 공급되고, 상평창이 진휼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그 관원도 두 기구의 일을 겸무하게 되어 그기능은 일시 강화되었으나, 중기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인조 때에 폐지되었다.12)

## (3) 의 창

평시에 곡물을 비축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백성에게 대여해 생업에 종사케 하거나 기민을 구제하던 진휼기구이다. 조선은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의창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 기원은 고구려 故國川王 때의 賑貸法이라 하며, 고려에서는 태조가 黑倉을 설치했고 성종 5년(986)에 義倉으로 개칭 확대되었다. 《경국대전》에 "軍資倉은 別倉을 설치하여 잡곡을 많이 비축했다가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그 본 수만 받아들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소모량 등의 원곡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10% 정도의 이식을 징수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의창은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운영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각 군현에 설치된 의창의 원곡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문종 2년(1452) 에 별도로 사창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창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점차 만연되어 가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중종 20년(1525)에는 이를 폐지하고 그 사업을 진휼청에 통합하였다.13)

## (4) 사 창

지방 각 군현의 마을에 설치된 곡물 대여기구이다. 농민에 대한 진휼기구라는 면에서는 의창과 같은 성격이나 의창이 관설의 진휼기구인데 반하여사 장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진휼기구이다.

<sup>12)《</sup>經國大典》권 2, 戶典 常平倉.

<sup>13)《</sup>經國大典》권 2, 戶典 軍資倉.

#### 370 Ⅲ. 구제제도의 그 기구

우리 나라에서 사창이 처음 설치된 것은 세종 30년(1448) 경상도 대구군의 시험적인 실시였다. 이것이 문종 원년(1451)에 이르러 경상도 각 군현의 사창 설치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사창은 원곡을 대여해 이식을 취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원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나, 뒤에는 취식에 중점을 두게되어 점차 진휼기구가 아닌 국가적 고리대기관으로 전략해 갔다.

어렵게 설치된 사창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 서서히 폐지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기대와는 달리 진휼기구가 아닌 대여기관으로 변질되고, 또 그 원곡이 관리 소홀로 더욱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종 원년(1470)에 이르러 시행된 지 20년만에 호조의 제의에 따라 혁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창이 폐지된 뒤에도 뚜렷한 대응책이나 기존 진출기구의 성과가 없자 16세기 이후에도 이 제도의 부활논의는 계속되었다.

## (5) 혜민서

조선시대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醫女를 교습하는 진휼기구이다. 태조 원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惠民局을 설치했으며 세조 12년(1466)에 혜민서로 개칭되었다. 그 위치는 남부 太平坊이었다.

관원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는 提調 1인을 비롯해서 主簿(종6품)·醫學教授(종6품)·直長(종7품)·奉事(종8품)·醫學訓導(정9품) 각 1인과 參奉(종9품) 4 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채용시험 최고 득점자 1인과 直長 이상의 관원 중 1 인은 久任員이고 나머지는 遞兒職이었다.

## (6) 활인서

조선시대 한성의 질병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던 진휼기구이다. 태조 원년에 동·서대비원 2개 기구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며, 태종 14년(1414)에 이를 동서활인원이라 하였고 세조 13년(1467) 東西活人署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동부활인서의 위치는 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이고, 서부활인서는 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었다. 그리고 관원은 別提(종6품)・參奉(종9품) 등이 있었다.

## (7) 진제장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설치 운영한 급한 飢餓者의 구제기구이다. 이 곳에서는 기아자에 대한 특별 구급책으로 시식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임무였다. 조선 초부터 상설 진제장에 준하는 것으로 서대문 밖의 홍제원·동대문 밖의 보제원·남대문 밖의 이태원 등 3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진제장은 기류민이 발생해야 비로소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성부에서는 이 밖에도 임시 진제장을 사원이나 다른 곳에 설치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갔다. 그리고 이들 진제장의 운영은 주로 한성부 낭청과 5부의 관원이 맡아 보았다. 또 각 지방에도 이와 같은 임시진제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金鎭鳳〉

## 2. 의료제도

조선 초기의 의료제도는 개국 당시에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태종에서 성종 때까지 개편과 정비를 거듭하여 고려시대보다 훨씬 확충된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즉 三醫司는 물론 濟生院과 東西活人院(活人署)의 기능을 정비·강화하였고, 의정부·육조·종친부·충훈부·도총부 등 각사에도 의원을 배치하였으며, 경성 5부와 성균관에도 月令醫를 파견하였다. 또한 전옥서에는 獄醫를, 삼군에는 軍醫를, 그리고 수군영에는 海道醫員을 배정하였고, 각 계수관마다 醫院을 설치하여 지방민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지방민에 대한 구료는 각 도에 파견된 審藥・醫學敎援와 지방의 의생이모두 함께 담당하였다.1)

한편 의약활인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발탁하였고, 우수한 의원을 보다 많이 양성하기 위해 의원과 의생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醫書

<sup>1)</sup> 三醫司는 처음에는 典醫監・惠民局・濟生院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세조 때 제생원이 헤민국에 합속된 뒤로는 內醫院・典醫監・惠民署를 지칭하는 것이다.

習讀官制를 신설하여 양반 자제에게도 의학을 공부하도록 권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도 外科醫・鍼灸醫・獸醫 등 전문의가 존재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종대부터 침구의 등 전문의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침구의・瘰癧醫・治朣醫(외과의) 등이 전문의로서 각 醫司에 배치되어 활동함으로써 의술의 전문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 선초에 편찬된 여러 우수한 의학서적도 이러한 의학의 학문적・기술적・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鄉藥集成方》과《醫方類聚》는 조선 초기 의학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 온 향약은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전국의 향약 재배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채취 시기와 방법 및 乾正法 등을 하달하였으며, 중국에 의원을 파견하여 약성을 감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향약을 연구·개발하기 위해《鄕藥濟生集成方》·《鄕藥採取月令》·《鄕藥集成方》등 우수한 의서를 편찬하였다.

태종대에는 한국 의학사상 최초로 의녀제도를 창설하여 부녀자의 질병을 돌보게 하였다. 의녀제도의 실시는 부녀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이외에 비록 官婢 출신이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으며, 이후 産婆라는 새로운 여성 직업인이 탄생하여 사회에 기여한 것 또한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당시에 이들의 활동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매우큰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의학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크게 발달하여 한국 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제도 또한 전보다 더욱 발전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시대 의료제도의 기반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 1) 의료시책

醫療制度는 愛民·恤民의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정자들에 의해 부단히 추진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왕권의 확립을 이룩한 태종대부터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었다.

## (1) 의학교육의 강화

의료의 혜택을 고루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의원의 확보였다. 따라서 태조 2년(1393) 6학의 하나로 의학을 설치하여 양가의자제에게 의학교육을 시켰고, 태종 6년(1406) 10학을 설치하고 提調官을 두어의학교육을 강화하였다.<sup>2)</sup> 태종은 9년 2월 의정부의 건의로「醫藥活人法」을 제정하였는데,<sup>3)</sup> 이것은 의업출신자를 전의감의 權知와 제생원·혜민국의 별좌로 삼아 의업에 정진토록 한 것이다.

세종은 儒醫를 삼의사에 겸직시켜 의학교육과 의술을 兼治하도록 하였으며,4) 세조 때에는 80명의 의생가운데 50명은 전의감에, 30명은 혜민서에 속하게 하여 교육을 강화하였다.5) 그러나 양반이 의술을 천시하여 의학에 정진하는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큰 성과가 없었다. 세조가 친히 《醫藥論》6)을 저술하여 任元濬으로 하여금 주해를 부쳐 인쇄 반포케 한 것도 의학교육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조는 또 의원이 의서 읽는 것을 유생의 예에 의하여 매달 삭망에 親講 토록 하였으며,7) 성종은 생도를 독려하기 위해 각사 제주로 하여금 매달 고 강하여 성적이 나쁜 자는 직첩을 회수하고 해당 관사의 서리로 임명하였다 가 능통한 뒤에 복귀토록 하는8) 등 의학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능한 자 는 특별 서용하거나 품계에 따라 副提調・兼教授의 칭호를 주도록 하였고 특출한 자는 서얼을 막론하고 내의원에 입속을 허락하는 등 의학교육과 의 술보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9)

이러한 의학교육은 의생뿐만 아니라 현직 의관에게도 실시하였기 때문에

<sup>2) 《</sup>太祖實錄》 권 4, 태조 2년 10월 기해. 《太宗實錄》 권 12, 태종 6년 11월 신미.

<sup>3) 《</sup>太宗實錄》권 17,태종 9년 2월 경진.

<sup>4)《</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生徒.

<sup>5) 《</sup>世宗實錄》권 65, 세종 16년 7월 경자.

<sup>6) 《</sup>世祖實錄》 권 31, 세조 9년 12월 신해.

<sup>7) 《</sup>世祖實錄》 권 37. 세조 11년 11월 신미.

<sup>8) 《</sup>成宗實錄》 권 16, 성종 2년 3월 경술. 《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勸.

<sup>9)</sup> 孫弘烈,《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202~203쪽.

의학과 의술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은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원 확보에도 기여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의술을 보급하고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의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醫書習讀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의생과 유생중에서 총민한 자를 뽑아 습독관으로 삼고 의학을 교육하여 특출한 자에게는 동반직을 제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0)

이 의서습독법은 세종 때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단종·세조·성종대에 습독관에 대한 勸懲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강화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관직(주로 遞兒職)을 내의원과 전의감에 증설하여 이들을 격려하였으며, 습독관 출신은 현직을 제수받더라도 내의원직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의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11)

또한 문신들에게도 의학을 장려, 유의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의원들과 함께 선초에 의서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초에는 의학지식의 보급은 물론 의원도 많이 양성하였고, 이러한 의학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은 조선시대 의학의 발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의학발전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학교육은 지방에서도 실시되었다. 즉 태조 2년 全羅道按廉使 金希善의 건의에 의해 매 계수관마다 의원을 설치하고, 양반 자제를 뽑아 교육을 시 키게 한 것이 시초였다.12) 그후 태종·세종대에 土官이 설치된 지역에 醫學 院・司醫局・掌醫局 등을 설치하여 의생교육과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13) 그리고 세조·성종대에는 지방의생의 정원을 정해 敎諭로 하여금 이들의 교육을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1명씩 파견된 교유가 여러 고을의 의생을 제대로 교육할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유와 의생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들이 지방민의 치료와 약재의 채취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방 의생은 의술이 미숙하여 치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3의사에 醫

<sup>10) 《</sup>端宗實錄》권 13, 단종 3년 정월 신미.

<sup>11)</sup> 孫弘烈, 앞의 책, 205~210쪽

<sup>12) 《</sup>太祖實錄》 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sup>13)</sup> 孫弘烈, 앞의 책, 211~212쪽 참조.

生房을 설치, 이들을 재교육시켜 시험에 응하게 하였다.<sup>14)</sup> 그리고 성종대에는 지방 의생 중 총민한 자를 5년에 한 번씩 34명을 뽑아 올려 전의감과 혜민서에 분속시켜 교육함으로써<sup>15)</sup> 의원 양성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개국 초부터 의원 양성에 노력한 것은 의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과 일반 병자를 모두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 의생의 교육에 특별한 대책이 계속 강구된 것은 중앙에는 활인원·혜민국·제생원 등이 있었으나, 지방에는 계수관마다 의원이 겨우 1개소씩 설치되어 있거나, 토관이 설치된 지역에 의학원·사의국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치료는 주로 의생이 담당하였으므로 지방민의 구료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 (2) 의녀제도의 창설

醫女制度는 조선 초에 새로 설치된 것이다. 당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이 유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구별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해져서, 양가 의 부녀자들이 男醫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하여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 는 경우가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종 6년(1406) 3월 濟生院知事 許衢의 건의로 의녀제도를 신설하고, 童女에게 의술을 가르침으로써 의녀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16) 그런데 교육대상이 모두 관비들이어서 학문의 기초가 전혀 없는 데다가그 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17명으로 중원되었음) 의녀교육은 의생교육보다 더욱 어려웠고, 따라서 成才者도 그만큼 적었다.

이에 세종은 醫女訓導官의 勤慢과 의녀의 習業을 예조와 승정원으로 하여 금 늘 고찰하도록 하여 의녀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그 때까지의 의녀는 모두 중앙에 있는 각사의 관비들이어서 의술을 익힌 후 그 활동무대는 대개서울이었다. 따라서 세종 5년(1423) 허도의 건의에 따라 각도 계수관의 관비중 총명한 자를 뽑아 이들에게 침구와 조제법을 가르쳐 다 배운 후 본거지에

<sup>14) 《</sup>世宗實錄》권 28, 세종 7년 5월 임신.

<sup>15) 《</sup>大典續錄》 권 3, 禮典 獎勸.

<sup>16) 《</sup>太宗實錄》 권 11, 태종 6년 3월 병오.

가서 그 지역의 부녀를 치료하게 함으로써 지방에까지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하였다.17)

세종은 그 후 지방 의녀의 수를 대폭 늘렸는데, 이것은 의료의 혜택이 전국에 미치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였지만, 그 동안 지방에서 의녀의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비는 국가에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발이 가능했다. 또 천민이었으므로 남의에게서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의학교육을 시키게 된것이 아닌가 한다.

의녀도 당당한 의사로서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뒤에는 醫妓라 하여 기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원래 관비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도 교육은 철저히 시켰지만, 원래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의학의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목과 산부인과에 관한 것이 교육되었다.처음에는 《脈經》과 침구법이 교수되었고(태종 6년 3월), 뒤에 조제법이 추가되었으며(세종 5년 11월), 세종 12년(1430) 12월부터는 매월 《産書》를 고강하게하는 등 교수과목이 점차 추가되었다.

이렇게 의녀교육을 하는 동안 세조 때는 권장법이 마련되고,18) 성종 때는 勸課條目이 마련되어19)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권과조목에서 의녀를 3 등급으로 나누어 內醫(2명)・看病醫(20명)・初學醫라 하였다. 이 중 내의는 의술을 익혀 대내에 출입하면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간병의는 공부하면서 치료도 겸하는 자이며, 초학의는 교육받은 지 얼마 안되는 초보자를 말한다. 이들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이었고, 만 40세가 되도록 1方에도 불통하는자는 本役에 환송하였다.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던 의녀 이외에 의술을 익혀 본처에 배치된 의녀는 대체로 의원을 보좌하며 치료를 하여 현대의 간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녀는 침구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교육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산파

<sup>17) 《</sup>世宗實錄》 권 22, 세종 5년 11월 을사.

<sup>18) 《</sup>世祖實錄》권 30, 세조 9년 5월 경술.

<sup>19) 《</sup>成宗實錄》 권 89, 성종 9년 2월 기유.

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뒤에는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산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의녀는 의술에 뛰어난 자도 적었고, 그 수도 많지 않았으나 치료와 간형 그리고 산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부녀자에 대한 의료시혜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의녀제도는 조선 초에 실시한 의료시책 중 의료혜택을 부녀자에게까지 확대시킨 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鄕藥이라 하는 것은 중국약재(唐藥)에 대한 국산약재를 지칭하는 말이다. 고려 중기 이후 국산약재가 많이 개발·보급되면서 이것이 주로 질병치료에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三和子鄕藥方》·《鄕藥惠民經驗方》·《鄕藥古方》등의 향약서가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산약재가 많이 이용된 것은 그것이 풍토와 인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채취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때문이었다.

향약은 이와 같이 여러 이점이 있어서, 태조 때에 이미 계수관마다 의원을 설치하고 여기에 採藥丁夫를 두어 약재를 채취해 이것으로 치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향약의 보급이 실시되었고, 세종대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세종은 향약에 관심이 많아 세종 16년 약재의 채취법과 건정법을 지방수령에게 하달하였다. 다시 21년 4월에는 모든 향약을 재배하도록 하고 자생약재는 계절에따라 채취하여 구료하도록 하되 약재의 재배·채취의 다소·시약의 근만을 헌사에서 점검토록 지시하는 등 향약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다.20)

또한 동왕 30년(1448) 정월에는 제도 감사에게 명하여 향약의 채취시기와 건정을 법에 따라 해서 약성을 잃지 말게 하고, 상납할 때는 채취자의 관 직·성명·일시 및 약명을 적어 올리도록 하는 등<sup>21)</sup> 향약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국산약재의 약성과 약효를 중국산과 비교 해서 이용하기 위해 遺明使 편에 의관을 보내 약재를 가지고 가서 감별하 도록 하였다. 즉 동왕 5년 3월 盧重禮 등을 명나라에 보내 국산약재 62종을

<sup>20) 《</sup>世宗實錄》권 63. 세종 16년 정월 무신 · 권 85. 세종21년 4월 병오.

<sup>21) 《</sup>世宗實錄》 권 119, 세종 30년 정월 을미.

비교하여 약성이 다른 14종을 찾아내어 그 중 새 약재 6종을 발견하였고. 약 성 이 다른 8종은 사용을 금지시켰다.<sup>22)</sup>

그 후에도 이러한 약재의 감별을 계속하여 향약 개발에 노력하였다. 또한 국산약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사행 때마다 의원을 보내 중국약재를 구입 케 하였는데, 중국약재는 국산약재의 약성과 약효를 판별하여 사용하는데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세종은 또 향약을 보급하고 이를 효과 있게 이용하기위해 노중례에게 명하여 동왕 13년 《향약채취월령》을 편찬·간행하였다.23이 책은 월별로 채취해야 할 약재를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보다 완벽하게향약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향약의 개발과 보급으로 구하기 쉽고 값싼 약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환자를 구하게 된 것은 물론 이러한 정책은 우리 나라 의학 발달의 자주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 (4) 의서의 편찬

조선 초기는 한국 역사상 의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로서, 특히 세종·세조·성종의 의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한국 의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향약의 개발·보급과 함께 진행된 의서의 편찬은 의학과 의술의 발전은 물론 의료혜택을 전국에 고루 미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문적 업적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의료시책이 마련되고 추진될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은 태조 이래 역대 국왕들의 관심으로 중앙의 의료기구가 정비되고, 지방에 의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진료와 교육을 위한 의서의 필요성에 따라 많은 의서가 편찬되었다. 특히 향약에 대한 관심과 이를 이용한 치료법의 개발로 괄목할 만한 향약서가 찬술되었는데, 조선 최초의 향약서는 《향약제생집성방》이었다. 이 책은 고려 말기에 절찬된 여러 향약서를 참고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세종 때에 편찬된 《향약집성방》의 모체가 된 것이다. 그다음에 편찬된 것은 《향약채취월령》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약명·

<sup>22) 《</sup>世宗實錄》권 19. 세종 5년 3월 계모.

<sup>23)</sup> 三木榮,《朝鮮醫籍考》(中外醫事新報社, 1935), 4쪽 尹淮跋文 참조.

산지·맛·특성 및 건정법을 월별로 기록하여 향약의 이용도를 높히려 한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 최고의 향약서는 《향약집성방》이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것으로 세종 15년에 85권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의 고유 의서와 중국의서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조선 초기의 향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서적이며, 또한 본초학사상 진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이다. 이 책의 편찬은 우리 나라 본초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과학사에 빛나는 문화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4)

다음 종합의서 중 최고의 업적은 《의방유취》의 편찬이다. 이 책은 중국과 국내 의서 153종을 참고로 집현전의 학자와 의관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것이다. 세종 27년의 이 책은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동양의학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책은 의서의 方文을 단순히 수집·나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토대로 재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sup>25)</sup>

이 외에《産書》(撰者不明)·《胎産要錄》(盧重禮)·《鍼灸擇日編集》(全循義·金義孫)·《瘡疹集》(任元濬) 등 전문의서와 구급방·수의서·식품서 등의 편찬으로 다방면에 걸쳐 의학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의서의 편찬도 조선 초에 입안하여 시행한 의료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 (5) 전문의의 양성

조선 초에는 의학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정책의 시행으로 전문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최초의 전문의는 침구의로서 세종 15년(1433) 전의감 제주 黃子厚가 鍼灸專門法의 설치를 건의하였고<sup>26)</sup> 5년 후인 세종 20년에 침구전문생 3명을 서용하여 3의사에 배치하는 것으로써 시작되었다.<sup>27)</sup> 그러나이

<sup>24)</sup> 孫弘烈,〈麗末·鮮初 醫書의 編纂과 刊行〉(《한국과학사학회지》11-1, 1989), 44~45 쪽.

<sup>25)</sup> 金斗鍾、《韓國醫學史》(探求堂, 1979), 221~226\.

<sup>26) 《</sup>世宗實錄》 권 60, 세종 15년 6월 임오.

<sup>27) 《</sup>世宗實錄》 권 80, 세종 20년 3월 경자.

침구전문법은 세조 때까지 치폐를 거듭하다가, 성종 3년(1472) 이 법을 특별히 설치하여 四孟朔 取才 때에 과목을 나누어 시험함으로써 침구전문의 제가 성립되었다.<sup>28)</sup>

다른 전문의로는 나력의가 있었다. 이것은 연주창(주로 결핵성이었을 것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으로서 제생원에 속해 있었는데,29) 뒤에 제생원이 해민국에 합속되었을 때 혜민국에 前銜・權知와 나력의 권지가 6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문의로서의 나력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외과의인 치종의가 있었다. 이것은 종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으로 선조 때는 治腫廳까지 설치되기도 하였다.30) 이 외에 각종 전문의서가 편찬된 것으로 보아 산부인과・안과・치과・소아과 등의 전문의도 있었을 것이나 상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조선 초에는 의료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시혜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의정부를 비롯하여 6조·종친부·충훈부·도총부에 의원이 배속되었고, 사역원·형조·전옥서·군기감·훈련관·의금부·성균관 등과 경성 5부에 월령의가 파견되어 관리·죄수·유생 및 민간의 치료를 담당하였다.31) 또한 각급 군부대와 군영에 군의(수군영에는 해도의원)가 배속되어 군인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그 중 해도의원은 세종 6년에 설치되었다가 동 18년에 폐지되었다.32)

조선 초기의 의료시책은 건국 초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의사를 확대·개편하고, 지방에는 의원을 설치하였으며 의녀제도를 창설하고 향약을 개발·보급하여 질병 퇴치에 노력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세종대에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정부내 각 기관에 의원을 배치하였으며 월령의제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의료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항약집성방》·《의방유취》등 한국 의학을 대표하는 의서를 편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의학 발전에

<sup>28) 《</sup>成宗實錄》권 16. 성종 3년 3월 경술.

<sup>29) 《</sup>世宗實錄》권 62, 세종 15년 11월 계묘.

<sup>30)《</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勵.

<sup>《</sup>大典後續錄》 권 4, 兵與 遞兒.

<sup>《</sup>增補文獻備考》 권 223, 職官考 10, 典醫監 附 治腫廳.

<sup>31)</sup> 孫弘烈, 위의 책, 189~191쪽.

<sup>32)</sup> 孫弘烈, 위의 책, 191~193쪽.

큰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 의학의 자주적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였던 것 이다.

## 2) 의료기구

조선 초기의 의료기구로는 중앙에 내의원·전의감·혜민국·제생원·활인원 등이 있었고, 지방에는 의원·의학원·사의국·장의국·의국 등을 설치하여 민간의 질병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기구의 설치연혁·관제·기능 등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 (1) 3의사

三醫司는 본래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제생원이 혜민국에 합속한 뒤로는 내의원·전의감·혜민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활인서를 추가하여 四醫司라고도 한다.

## 가. 내의원

內醫院은 고려의 尙藥局을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 초기에 內藥房 또는 藥房이라 하던 것을 세종 25년 이조의 건의로 내의원이라 개칭하고 정원 16 명을 두었다.33) 그 후 문종과 세조 때에 일부가 개편되고, 성종 때에 그 직제가 완성되었는데, 그 조직은 正・僉正・判官・主簿 각 1명, 直長 3명,奉事・副奉事 각 2명, 參奉 1명 등 정원이 12명이었다.34) 그 외에 도제주(겸관, 정1품)・제주(겸관, 종1품 이하)・부제주(승지겸임, 정3품) 각 1명과 별좌 12명을 두어 내의원의 업무를 지휘・보좌하게 하였다.

내의원은 국왕을 비롯한 왕족의 치료와 어약의 조제가 그 임무였지만, 궁중은 물론 종친 및 2품 이상 고관의 치료도 담당하였다. 내의원 의관은 왕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의관의 자질은 3의사 중 가장 우수하였다.

<sup>33) 《</sup>世宗實錄》 권 100, 세종 25년 6월 무술.

<sup>34)《</sup>經國大典》권 1, 吏典 內醫院.

#### 나. 전의감

與醫監은 고려의 與醫寺를 계승한 것으로, 태조 원년에 설치된 것이다. 처음 직제는 고려 문종과 충렬왕 때의 제도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 후 태종·세종·세조대에 몇 차례의 개편을 거듭한 후 성종대에 완성되었는데 그 구성은 정·부정·첨정·판관·주부 각 1명, 의학교수·직장·봉사 각 2명,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참봉 5명 등 정원이 21명이었다. 35)이 외에 제주 2명(타관겸임)·의서습독관 30명·의학생도 50명이 속해 있었다. 이들의관 중 주부(종6품)이상은 모두 醫科에 합격한 자를 임명하였으나 그 이하는 생도 중에서 탁용하거나 취재에 의해 임명되었다.

전의감은 국가 의료기관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朝官의 진료‧賜與藥材의관리・약재의 재배와 채취・외국약재의 구입과 판매・민질의 구료・의서편찬・의학교육・취재 등 국가의 의료사업을 모두 관장하였다. 이 중 중요한것만 보면, 태조 2년(1393) 조관의 진료는 전의감에서 맡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6) 태종 11년(1411)에는 약재 재배를 관리하던 種藥色을 흡수하여 種藥田을 관리하였으며,37) 세조 4년(1458)에는 주로 중국약재를 매매하던 生藥鋪를 병합하여 생약의 전매도 담당하였다.38)

또한 淸心圓·蘇合圓·保命丹 등 구급약의 제조도 전의감의 주요 임무와 하나였다. 이와 같이 전의감은 국가의 중심 의료기구로서 모든 의료업무는 물론 의료정책의 입안과 시행까지도 주관하던 기구였다.

#### 다. 혜민서

惠民署는 처음에는 혜민국이라 하던 것으로 고려의 惠民典藥局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태조 원년에 설치된 이후 그 직제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성종 때 완성되었다. 그 구성은 주부 1명·의학교수 2명(1명은 문관이 겸임)·직장·봉사·의학훈도 각 1명·참봉 4명 등 모두 10명이 정원인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sup>39)</sup>

<sup>35)《</sup>經國大與》 권 1, 吏典 典醫監.

<sup>36) 《</sup>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1월 기사

<sup>37) 《</sup>太宗實錄》권 21, 태종 11년 6월 임진.

<sup>38) 《</sup>世祖實錄》 권 13. 세조 4년 6월 감술.

<sup>39)《</sup>經國大典》 권 1, 吏典 惠民署.

혜민서는 약을 전매하고 서민을 구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그러나 혜민서에서는 활인원과 같이 병자를 모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치료하거나, 활인소·한증소·구료소 등에 의원을 보내 치료를 맡게 하였으며,400 권지 60명 중 24명을 각 사와 경성 5부의 월령의로 파견하는 등410 중요한 의료 기구로 활약하였다.

세조 6년 제생원이 혜민국에 합속되자 기아·고아의 護養과 의녀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세종 5년(1423) 이후는 사행이 갈 때마다 의원을 보내 약재를 구입하여 전매하고, 이것을 원료로 청심원 등 구급약을 제조·판매하였으며, 뒤에 혜민서에는 전함·권지 및 나력의 권지가 모두 69명이나 속해 있으면서,42) 민간의 질병 치료를 담당하였다.

## (2) 제생원

濟生院은 고려의 濟危實와 같은 것으로 태조 6년 8월에 설치되었다.43) 제생원에는 정부에서 米布를 주어 寶를 삼도록 하였으며 그 이자로 약을 구입하여 가난한 병자를 구하게 하였다. 또 노비를 주어 이들로 사환과 채약인을 삼아 약재를 채납하여 구료에 충당하도록 하였다.44) 제생원은 병자의 치료만을 담당하던 醫司와는 달리 빈민·행려·환과고독·독질·폐질·실업민과 기아·고아 등을 치료·호양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기아와 고아는 모두 제생원에서 보호하였기 때문에 세종 17년(1435)에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집 3칸을 지어 院의 노비 각 1명과 良・賤중에서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급료는 埋骨僧과 같이 하도록하였다.45)세종은 특히 기아와 고아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기아자에 대한 적극적 수색과 기아・고아의 호양에 진력하는 한편 기아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sup>40) 《</sup>世宗實錄》권 3, 세종 원년 2월 기축·권 18, 세종 4년 10월 병술·권 15, 세종 4년 정월 계유.

<sup>41) 《</sup>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 5월 병오.

<sup>42) 《</sup>世祖實錄》 권 21, 세조 6년 7월 임인.

<sup>43) 《</sup>太祖實錄》 권 12. 태조 6년 8월 임인.

<sup>44) 《</sup>世宗實錄》 권 57. 세종 14년 7월 병진.

<sup>45) 《</sup>世宗實錄》 권 68, 세종 17년 6월 임술.

#### 만들었다.46)

또 태종 6년(1406)에는 제생원 지사 허도의 건의로 의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의녀에 대한 교육을 제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생원은 이와 같이 병자에 대한 치료와 기아·고아의 보호, 의녀교육 등을 담당하하다가 세조 6년(1460) 혜민국에 합속됨으로써 폐지되어<sup>47)</sup> 그 기능은 혜민국에 의해 유지되었다.

## (3) 활인서

活人署는 고려시대의 東西大悲院으로서 조선 초에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가 태종 14년 東西活人院으로, 세조 12년 활인서로 개칭하여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호를 맡았던 기관이다. 활인서의 관원은 처음에는 부사 1명·녹사 2명이었다. 그 후 태종·세종·세조대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성종 때에 완성된 것을 보면, 별제 4명·참봉 2명 등이 동·서에 각 6명이었고, 이 외에 제주 1명, 의원 2명을 각각 더 두었다.

활인원에는 숙소·병동·한증소 등의 치료소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특히 한증소는 질병치료를 위해 매우 중시되었기 때문에 세종은 두 차례에 걸쳐 京中과 성문 밖에 한증소 5개처를 증설하고 미·포를 내어 운영을 도왔다. 48) 활인원에 수용된 기민에게는 1인당 1일에 쌀 1되씩이 지급되었고. 이외에 病人料·汪蒸僧料·院布·종이 등이 지급되었다. 49)

이 곳에는 관리와 의원 외에 승려와 무녀가 속해 있었다. 승려는 한증소의 관리승과 매골승이었다. 전자는 한증소 관리와 간병을 맡은 자이고, 후자는 사망자의 매장을 담당하던 승려로 양원에 각 8명씩 있었다.50)

활인원에 무녀가 있게 된 것은 세종 5년 예조의 건의에 의해 외방의 무녀를 추쇄하여 분속시키면서였다. 그 후 도성 내의 무녀를 성 밖으로 축출하면서 이들도 동서활인원에 보내 병자를 돌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활인원

<sup>46) 《</sup>世宗實錄》 권 80, 세졸 20년 3월 갑진.

<sup>47) 《</sup>世祖實錄》 권 20, 세조 6년 5월 정유.

<sup>48) 《</sup>世宗實錄》권 18, 세종 4년 10월 병술.

<sup>49)</sup> 孫弘烈, 앞의 책, 185~186쪽.

<sup>50) 《</sup>世宗實錄》 권 18, 세종 4년 10월 병술 · 권 37, 세종 9년 9월 병술.

에는 관리·의원·승려·무녀 등이 속해 있으면서 도성 내의 기민과 병자를 구료하였다. 활인원은 원래 예조 소속이지만 주로 도성 내의 사람들을 구휼하였기 때문에 한성부와 사헌부의 감찰을 받기도 하였다.51)

## (4) 지방의 의료기구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조선시대에도 지방에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그 대 강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 최초의 지방 의료기구는 醫院이었는 데, 이 의원에서는 의생을 교육하였고 교수관에게는 또 채약정부[藥夫]를 속 하게 하여 약재를 채취, 이것으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태조 2년(1393) 전라도안렴사 김희선의 다음과 같은 건의로부터 비 롯되었다.

외방에는 의약에 밝은 자가 없으니 각 도에 醫學敎授 1명씩을 보내주십시오. 각 界首官마다 醫院을 설치하여 양반자제를 뽑아 생도를 삼은 다음 그 중에서 글을 알고 성품이 온후한 자를 택하여 敎導를 삼아《鄉藥惠民經驗方》을 익히게하되, 敎授官이 돌아다니며 교육하게 해주십시오. 또 採藥丁夫를 교수관에게 속하게 하여 때를 맞추어 약재를 채취하게 하고, 이것으로 方文대로 약을 지어두었다가 병자가 생기면 구료하도록 하소서(《太祖實錄》 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각 도에 배치된 醫學敎諭(태종 16년 8월 이전까지는 의약교수라 하였음)는 지방의료의 중심적 존재로서 의생교육 그리고 관리와 백성의 병치료는 물론, 약재의 채취와 건정 및 조제까지도 담당하였다. 의생은 피교육자였지만 교유를 보좌하여 민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약재를 관리하는 등 지방의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또 각 도에 1~3명씩 배치되었던 審藥도 지방민구료의 중요한 존재였다. 한편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들만으로는 감당할수가 없어 3의사의 의관이 파견되어 치료하였다. 그러나 교유 혼자서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생이 직접 치료하거나, 때로는 무격으로

<sup>51) 《</sup>世宗實錄》 권 37, 세종 9년 9월 병술.

하여금 병자를 구료하게 하고 이들의 巫稅나 잡역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52) 단종 즉위년(1452) 5월에는 任元濬의 건의로 諸道左右界首官이 의국을 설치하여 제약·판매하도록 함으로써<sup>53)</sup> 지방 의료기구가 확대되었으나 그효과는 알 수 없다. 이 외에 개성에도 대비원과 혜민국이 있었는데,<sup>54)</sup> 그 조직이나 구료활동 등은 잘 알 수 없다.

한편 동북면과 서북면에도 태종과 세종대에 토관이 설치되면서 의료의 혜택이 미치게 되었다.55) 이곳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관원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지방의료의 말단은 채약인으로서, 이들은 목 이상에는 5명, 도호부에 4명, 군에 3명, 현에 2명씩 배정되어 약재를 채취하였다.56) 채취한 약재 중 상납할 것 이외의 것은 監營에서 민간의 질병을 구료하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청심원·소합원·보명단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약재의 채취 및 판매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藥店57)도 있었던 것 같으나,58)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 ⟨표 1⟩

지 역	의 료 기 구	소 속 관 원
平壤府	醫學院	掌醫藥:副使・直長
	大悲院	掌病人
永 興 府	醫 學	丞 1・助教 2
咸 興 府	醫學院	丞 1
慶 源 府	司醫局	丞 1
寧 北 鎭	掌醫局	丞 1
鏡 城 府	醫學院	錄事
會 寧 府	掌醫局	丞 1

<sup>52) 《</sup>世宗實錄》 권 44, 세종 11년 4월 계사.

<sup>53) 《</sup>端宗實錄》 권 1, 단종 즉위년 5월 계사.

<sup>54)《</sup>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 開城府 上, 驛院・公廨.

<sup>55)</sup> 孫弘烈, 앞의 책, 194~195쪽.

<sup>56) 《</sup>經國大典》 권 4. 兵典 雜類.

<sup>57)</sup> 藥店은 고려시대에 지방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기구로 藥店正·藥店副正·藥店史 등의 鄕東가 있어 이를 관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孫弘烈, 앞의 책, 11 5~116쪽 참조).

<sup>58) 《</sup>世宗實錄》 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나. 민간의료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행하는 침구와 약물치료 이외에 민간요 법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은 한증욕·온천욕 등의 목욕치료법을 비롯하여 확실한 효과가 있는 민간의 비방 및 효력이 뛰어난 약수 등이 그러한 것이라 하겠다. 그 중 전술한 한증요법은 주로 한성에서 행하던 것이었고, 온천욕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개소의 온천59)을 이용한 물리요법이었다. 이러한 온천치료법은 삼국시대부터 있던 것이지만, 조선 초에 적극 개발하여 온천을 발견한 자는 포상하고 관원은 超授하였으며, 관리하는 고충때문에 이를 숨기는 자는 처벌하는 등 온천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한편 온천에서 병을 치료하는 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하였다.

즉 세종 9년(1427) 9월 예조의 건의에 따라 溫井 부근의 한량인과 승려 중적당한 자를 골라서 監考를 삼아 온정수리와 병자구호를 관장케 하고, 각 온정에는 보를 세워 그 이식으로 병자에게 米豆를 공급하되 이를 감고와 색장이 전장하며, 사용하는 그릇은 관물을 공급하고 寶米의 관리와 병자 구호는 수령이 늘 고찰하되, 立寶米豆는 200석을 넘지 않게 하였다.60) 이에 따라 각 온천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나 여기에는 의원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민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의 또 다른 민간요법도 많이 있었는데 문종 때 평안토인 金於郎의 蠱毒治療法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전국에 알려 누구나 치 료할 수 있게 하였으며<sup>61)</sup> 淸州의 椒水, 殷栗의 鹹泉, 雲山의 약수 등도 민간 요법으로 각종 질병의 치료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약재를 목욕물에 혼용하 여 목욕하는 藥浴도 많이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의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이를 더욱·확대 정비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의료시혜의 폭을 더욱 넓혔던 것이다. 특히 활인원의 기능은 고려시대보다 더욱 다양해져 도성

<sup>59)</sup> 金斗鍾, 앞의 책, 240~244쪽 도표 참조.

<sup>60) 《</sup>世宗實錄》 권 37. 세종 9년 9월 임자.

<sup>61) 《</sup>文宗實錄》 권 5, 문종 원년 정월 계축.

388 Ⅲ. 구제제도의 그 기구

내의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국립 의료기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여러 의료기구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소임을 다하고 자 노력했던 것은, 역대 국왕을 비롯한 위정자의 지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특히 세종은 민간의 질병 구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기존 기구의 운영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조선 초기의 의료제도의 기틀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孫弘烈〉

## 찾 아 보 기

#### 강남농법 江南農法 101 $[\neg]$ 강사포 絳紗袍 298,301,302 개경 開京 337, 351, 352 가계 加階 80, 90 개국공신 開國功臣 60, 92, 99 가내 사환노비 家內使喚奴婢 209. 개국공신계열 關國功臣系列 61 211 개성(부) 開城(府) 150, 386 가례 家禮 138, 274 개인수조지 個人收租地→사전 私田 가묘 家廟 276, 280 거경시위 居京侍衛 85 가문의 혈통 家門의 血統 거지 丏乞 63 357, 363, 368 가사정제 家舍定制 345, 347 거푸집 350 가사제한령 家舍制限令 346 건강법 乾薑法 333 가족구성 家族構成 249 건정벌 乾正法 372, 377, 379, 385 가첩 家牒 282 검교직 檢校職 66, 73 가현 加現 198 겁령구 怯怜口 64 가호 家戶 17 겸관직 兼官職 83 각사노비 各司奴婢 203~207, 213~ 겸사복 兼司僕 $84,88 \sim 91,137$ 215, 218~220, 222, 225 결고 裌袴 317, 319 각사노비의 신공 各司奴婢의 身貢 225 결군 裌裙 319 각사비 各司婢 199 겹단령 裌團領 각사 조예 各司皂隷 366 결저고리 裌赤古里→과두 裹肚 각사 차비노 정액 各司差備奴 定額 겹집 342 216 경거노비 京居奴婢 204 각색장 各色掌 219 경공장 京工匠 188,189 각시 角柿 327 경관 京官 151, 152 간가수 間架數 2, 18 《경국대전》 《經國大典》 $58,72 \sim 74$ 간경도감 刊經都監 351 $78, 79, 81, 90, 92, 102, 107, 117 \sim 119, 121,$ 간병의 看病醫 376 $124 \sim 127, 131, 134, 135, 137, 139, 140 \sim$ 갈근 葛根 367 142, 146, 149, 154, 277, 281, 368 감고 監考 361, 387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 121 감등수직 滅等受職 72 경시위패 京侍衛牌 87 감무 監務 117 경아전 京衙前 137, 142 감주 甘酒 333 경역 京役 117 갑사 甲士 84, 85, 87, 88, 91, 94, 154, 경역인 京役人 196, 243 경외 기류민 京外飢流民 364

경재소 京在所

67

갑사취재 甲士取才 88, 196, 243

276 과전법 科田法 42, 46, 84~86, 96, 98, 《경제육전》《經濟六典》 경험진제방 經驗賑濟方 367 99, 102 **겉마기(곁막음)** 裌隔音・肩亇只・肩莫伊 관계 官階 55, 57 296, 304, 306, 308, 323 관기 官妓 192, 199 관노비 官奴婢 203~207.213 계고조소종 繼高祖小宗 287 계궁자 階窮者 80 관법 寬法 21.25 계부소종 繼父小宗 287 관비 官婢 147, 200, 375, 376 계성지손 繼姓之孫 291 관비의 선상 官婢의 選上 199 계조부소종 繼祖父小宗 287 관상감 觀象監 131,135 계증조소종 繼曾祖小宗 287 관수관급제 官收官給制 99,223 《계후등록》 《繼後謄錄》 291, 292 관습도감 慣習都監 199, 201, 202 고 袴 312,320 관품 官品 71,81,83,97 고공 雇工 194, 195, 227 관학생 官學生 84 고도첩리 古道貼裏 315 광대 廣大 195, 197, 202 고독치료법 蠱毒治療法 387 교노비 校奴婢 203, 207, 213 고려양 高麗樣 313 교방공인 敎坊工人 201 고존장죄 告尊長罪 229 교생 校生 111, 112, 120, 123, 126, 128, 고직 庫直 215 132, 141 고형산 高荊山 76,77 교서관 校書館 74 곤룡포 袞龍抱 298, 302 교위 校尉 153 곤복 衰服 298, 299 구 口 18 구들 353, 354 공노비 公奴婢 203, 204, 207, 208, 213, 214, 217, 225, 226, 229, 231, 234 구显 救療 359,363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公奴婢의 立役과 구료소 救療所 368,383 구사 丘史 127, 214, 219, 224 身貢 213 공노비의 존재양태 公奴婢의 存在樣態 구수 口數 23,28 9장복 九章服 298,301 203 공민 公民 106,107 구황(방법) 救荒(方法) 362,367 공복 公服 55,308 《구황벽곡방》 《救翡辟穀方》 공사천예 公私賤隷 197 구황식물 救荒食物 365~367 구황식품 救荒食品 공신위 拱宸衛 87 335, 336 구황청 救荒廳 공신적장 功臣嫡長 73,84,90,92 368 《구황촬요》 《救荒撮要》 335.353 공신전 功臣田 85,96,100 공장 工匠 국가수조지 國家收租地→공전 公田 231, 232 공전 公田 96, 106 국가신분체제 國家身分體制 69 공천 公賤 국수요리 331 202 국역 國役 37,69,83,104,144,145 과거(제) 科擧(制) 44,47,70,74,108, 109, 114, 115, 136, 141, 143, 144, 148 국의 鞠衣 304, 307, ,308 과두 裹頭 302, 312, 317 국자감 國子監 124,125 과전 科田 67,84,96~98,117,119 《국조방목》 《國朝榜目》 252,272,274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299,302 금화도감 禁火都監 국혼 國婚 81 급보 給保 94 군 裙 318,319 급전법 給田法 98 군공면역 軍功免役 148 급주노비 急走奴婢 206 기 妓 192 군관 軍官 152~155 군교 軍校 111, 113, 121, 123, 152 기갑사 騎甲士 88 군기감 軍器監 204 기관층 記官層 153 군액수 軍額數 23 기년친 期年親 92 군역 軍役 51,83~86,134,145,148, 기술관 技術官 48,69,82,106,108,110  $\sim$  112, 114, 119  $\sim$  123, 135, 136, 142, 148, 164, 167, 174, 175 군의 軍醫 371 151 기술관아 技術官街 110 군자곡 軍資穀 360 군자전 軍資田 99 기술관취재 技術官取才 124~128 군전 軍田 84,85,87,97,151 기술학 技術學 49,119,120,123~129, 군전체수 軍田遞受 85 132 기술학생도 技術學生徒 120, 123, 125, 군호 軍戶 83 굴피집 樺皮집 338 126, 128 기와집 339, 341, 344, 345 궁장 宮牆 349 권농 勸農 123 기인거관자 其人去官者 67 권징법 勸懲法 374 기인역 其人役 144, 145, 215 기재 寄齋 73,253 궐근 蕨根 367 궐내차비 闕內差備 214, 215, 219, 기패관 旗牌官 152 김의정 金義精 76,77 귀족 숙위군 貴族宿衛軍 84,90~92, 김종서 金宗瑞 82 김치 종목과 재료 334 김희선 金希善 374,385 귀틀집 338, 342 귀향 歸鄉 62 귓대 350 [ㄴ] → ± 299,301 《규곤시의방》 《閨壺是議方》 326, 329, 나력의 凜癡醫 372, 380, 383 331, 332~335 나물 간수법 333 《규합총서》 《閨間叢書》 329 나장 羅將 154,366 나화립 羅火岦 320 권분상속 均分相續 266 근수노 根隨奴 214~217,221 난면 卵麵 331 근수노의 정액 根隨奴의 定額 216, 난방시설 煖房施設 217 남반 南班 58, 70 325 근친혼 近親婚 247 남방식품 南方食品 금루 禁漏 110, 113, 124, 128, 131 남산 南山 341 금선단 金線緞 304, 315, 323 남점 濫占 221 《금양잡록》《衿陽雜錄》 325,326 남정수 男丁數 29

남항 南行 59,74 남항수령 南行守令 74 남향집 南向집 352 납공노비 納貢奴婢 225 납속 納粟 136 내고 內庫 348 내금위 內禁衛  $84,87 \sim 91,94,137$ 내노비 內奴婢  $203 \sim 205, 213$ 내노비 선두안 内奴婢宣頭案 205 내료 內僚 64 내료직 內僚職 58 내루 內樓 348, 352 내상직 內上(廂)直 90 내섬시 內贍寺 204 내수사 內需司 135, 142, 204, 205, 225 내수사노비 內需司奴婢 142,205 내수사장리 內需司長利 103, 142 내수사전 內需司田 142 내시 內侍 72 내시부 內侍府 82 내시위 內侍衛 84, 87, 88, 91 내약방 內藥房 381 내외족친 內外族親 92 내의 內醫 376 내의원 內醫院 131, 381 내자시 內資寺 204 내직원 內直院 137 너와집 338 노비 奴婢 46, 48, 89, 101, 104~107, 160, 165, 166, 195, 196, 203, 209 노비 상속 奴婢 相續 266,267 노비세전법 奴婢世傳法 47, 107 노비수모범 奴婢隨母法 47 노비신공 奴婢身責 142 노비안 奴婢案 204, 220 노비의 신공액 奴婢의 身貢額 225, 226 노비의 신분세습법 奴婢의 身分世襲法 232 노비의 재산 奴婢의 財産 211

노비종모법 奴婢從母法 104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36, 134 노비주 奴婢主 107,108 노비 파악방식 奴婢把握方式 노역중단 勞役中斷 365 노의 露衣 304, 306, 307, 318 노중례 盧重禮 377, 379 노처 奴妻 194, 195 녹과전제 祿料田制 녹관체아직 祿官遞兒職 128 녹단상 綠團衫 305 녹봉 祿俸 66, 68, 88, 90, 97, 98, 115~ 117, 119, 139, 143, 146 녹사 錄事 67, 113, 116~117, 121, 122,  $137 \sim 143$ 녹사취재 錄事取才 138 농촌의 집 구조 343~345 누룩 333 누상고 樓上庫 349 누침 樓寢 353 능문능리 能文能吏 63,64

### [ㄷ]

다방 茶房 72 다처제 多妻制 133 단고 單袴 317, 319 단단령 單團領 315 단령 團領 297, 309, 312, 313 단리의 單裏衣→단속곳 단문이상친 袒免以上親 92 단삼 團衫 304, 305 단삼 丹衫 56 단속곳(단속옷) 320,325 단오자 短襖子 319 단저고리 短赤古里 319,324 답호 褡● 297, 302, 309, 312, 313 당상관 堂上官 80, 119, 120, 137, 138 당약 唐藥 377 당의 唐衣 308

329

당천(고)의 唐串衣 304 371, 384 당하관 堂下官 68, 79, 119 동성혼 同姓婚 247, 255 당한삼 唐汗衫 동의대 胴衣襨 298 304 대가세족 大家世族 107 《동의보감》《東醫寶鑑》 대금형 상의 對衿形上衣 동정직 同正職 318 66, 73 동종계 同宗契 대대 大帶 299, 301, 309 288 대립 代立 221, 224, 225 동종지자 同宗支子 250 대립가 代立價 222~224 동파관 東坡冠 311 대립가의 남징 代立價의 濫徵 두곽 豆藿 225 367 대만두 大饅頭 둔전경작인 屯田耕作人 332 216 대삼 大衫 304, 305 드므 350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120 뜸집 338 대종 大宗 287 대청 大廳→마루  $[\Box]$ 대홍단자노의 大紅段子露衣 319 더그레 加文剌 295,314 마루 353~354 마미군 馬尾裙 도군 都軍 153 319 도령 都領 153 만강대 彎强隊 231 도류 道流 만과 萬科 68, 113, 124, 128, 132 74 만도 晩稻 도목정사 都目政事 128 326 《도문대작》 《屠門大嚼》 326, 327 만호 萬戶 89.90 도성위 都城衛 87 말 襪 299, 301, 309, 312, 317 도순문진휼사 都巡問賑恤使 362 말군 襪裙 304, 307, 308, 319 도승 渡丞 117,141 매골승 埋骨僧 383, 384 도시의 집 구조 매점 買占 102 345 도총관 都摠管 매치원 埋置院 137 364 도포 道袍 304 《맥경》《脈經》 376 도학 道學 108, 124, 125 맥류 麥類 359 도화서 圖畵署 125, 135 맹씨행단 孟氏杏壇 337 도화원 圖畵院 68, 190 메벼 326 면 冕 돌확(돌절구) 350 299 돕지 開禁 295 면류관 冕旒冠  $298 \sim 300$ 동량청 東凉廳 353 면복 冕服 298 동반 실직수 東班實職數 면역 免役 115, 123, 126, 128, 132, 147, 83 동반 외관 정직록관 東班外官正職祿官 148, 154 83 면향 免鄕 128 동반 체아직 東班遞兒職 면회기법 面灰技法 83, 128 350 동서대비원 東西大悲院 131 명과학 命課學 124, 131 동서활인서 東西活人暑 370 명복 命服 304, 305, 307, 319 동서활인원 東西活人院 362, 363, 370, 모변전래 母邊傳來 263

모정 芽亭 345 목종전시과 穆宗田柴科 57 몽고어 통역관 蒙古語通譯官 64 320 몽수 蒙首 몽학 蒙學 124 묘막 墓幕 344 무격 巫覡  $193 \sim 95, 198, 202, 364,$ 385 《무경칠서》 《武經七書》 78 무공 武工 366 무과 武科 70, 79, 127, 134, 135, 148, 155 무과출신자 武科出身者 152 무관 武官 155 무관관료 武官官僚 60 무관직 武官職 76,91 무관 청요직 武官淸要職 82 무녀 巫女 363, 384, 385 무록관 無祿官 83 무반 武班 35, 56, 58, 154 무반직 武班職 88 무사체아직 無仕遞兒職 92 무사패별사전 無賜牌別賜田 100 무산계 武散階 56~58,81 무세 巫稅 199, 386 무수전패 無受田牌 84,86,87 무신 武臣 63, 154 무신귀족 武臣貴族 64 무위사 극락전 無爲寺 極樂殿 343 무적 巫籍 198 문계 門契 287 문과 文科 70, 79, 121, 127, 128, 134, 135, 148, 155 문관직 文官職 76 문관 청요직 文官淸要職 82 문당 門黨 287 문무계 文武階 56 문무산계 文武散階 56, 57, 61 문무 양반체제 文武兩班體制 58 문반 文班 55, 56, 58, 69, 153

문반직 文班職 114 문벌귀족 門閥貴族 62,63 문산계 文散階 81,119 문신 文臣 126, 128, 148, 154 문신귀족 文臣貴族 63, 64 문음 門蔭 69.70 문음승보 門蔭陞補 73, 74 문음취재 門蔭取才 92, 141 문족 門族 292 문중 門中 287 문지 門地 57,77,108 《문화유씨 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 282, 283, 285 《문화유씨 족보》 《文化柳氏族譜》 256 물고 物故 198 미두류 米豆類 358 《미암일기》 《眉巖日記》 353 미역의 종류 328 미죽 米粥 362 민간요법 民間療法 밀랍 蜜蠟→황랍 黃蠟

### [ㅂ]

바지 把持 296, 325 박종우 朴從愚 104 박지화 朴枝華 136 반감 飯監 215 반군 般軍 197 반상 飯床 329 반상기 飯床器 330 반석평 潘碩枰 발효식품 醱酵食品 329, 333 밥상차림 329 방갓 311 방령 方領 318 방심곡령 方心曲領 299, 309 방유령 方有寧 76,77 방전 方塼 343 방직 房直 215

방패 防牌 150 본관 本貫 62 배거리 背巨里 304 본관지 本貫地 62 배자 褙子 304 본국배자 本國背子 320 백립 白笠 311 본손 本孫 250 백저포 白紵袍 295, 313 봉당 封堂 343.344 백정 白丁 195~197, 202, 237~244 봉족 奉足 18, 23, 27, 88, 89, 203, 217, 백패 白牌 127 220, 243 백호 百戶 150 봉족제 奉足制 19 번상위병 番上衛兵 91 봉지 鳳池 298,304 범죄노비 犯罪奴婢 104 봉충위 奉忠衛 87 법제호 法制戶 17, 18, 22, 24 부녀자의 재혼 婦女子의 再婚 259 벽대청 壁大廳 343 부락내혼 部落內婚 268 벽전흥업 闢田興業 103 부모전 父母田 250 변계사민 邊界徙民 152 부변전래 재산 夫邊傳來財産 250, 변방수령 邊防守令 90 263 부역불균률 賦役不均律 220 별감 別監 137, 215, 219 별군 別軍 366 부위 副尉 81 별사전 別賜田 85,97,100 부장 部將 70 별서 別墅 104,344 부조전 父祖田 250 별시위 別侍衛 84,85,87~89,91,94, 부총관 副摠管 137 154 북도사민정책 北道徙民政策 150 별업 別業 104 분대례 分貸例 366 별와요 別瓦窯 339,345 분봉제 分封制 98 별정 別正 153 《분재기》 《分財記》 262, 264, 267, 별패 別牌 269, 271 243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150 분할봉사 分割奉祀 271 불고율 不告律 234,236 병사 兵士 153 불성호 不成戶 19 병오년의 예 兵午年의 例 339 병작반수 並作半收 101,102 비부 婢夫 194,195 보갑사 步甲士 88 비첩 婢妾 227 보단자 保單子 76~78 비첩소생 婢妾所生 232 보인 保人 94,243 보제원 普濟院 362.363 [人] 보충군 補充軍 134, 150, 185, 206, 233, 366 4관참외관 四館參外官 127 보충군제도 補充軍制度 36 4군6진 四郡六鎭 23,150 보충대 補充隊 215 사권 私權 106,107 복시 覆試 115, 127, 144 사노비 私奴婢 203, 208, 209, 복호 復戶 17,90,148 211,212,213, 226, 227, 231, 232, 234 복흥고 福興庫 204 사노비의 신공액 私奴婢의 身責額

229 233, 234 사노비의 유형구분 私奴婢의 類型區分 사전 私田 96~98,106 사전개혁(론) 私田改革(論) 42.98 210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私奴婢의 立 사전경기의 원칙 私田京畿의 原則 役과 身貢 226 85.98 4조 四祖 사노비의 존재양태 私奴婢의 存在樣態 74, 76, 77, 108 208 사조룡보 四爪龍補 사당 社堂 195, 197, 198, 202 사족 士族 52, 59, 60, 78, 107, 108, 111 사대부 士大夫 59,60,65,120,132,  $\sim$  122, 125, 126, 128, 129, 132, 133, 135,  $136, 141 \sim 148, 152$ 136 사대부계층 士大夫階層 사족성 士族姓 115 53, 54 사대부관료 士大夫官僚 113, 114, 116 사족자제 士族子弟 118, 127  $\sim$ 120, 121, 125, 133 $\sim$ 135, 140 $\sim$ 142, 144, 사창 社倉  $368 \sim 370$ 사창 폐지론 社倉廢止論 370 151, 154 사대부지림 士大夫之林 60 사처노비 私處奴婢 196 사대부지족 士大夫之族 60 사천 私賤 82 사패 賜牌 사류 士流 118 102 사류 士類 59, 60, 120, 141, 143 사패별사전 賜牌別賜田 100 사리 司吏 137 4학유생 四學儒生 127 사림 士林 59,60 사헌부 司憲府 70,117,118,139 사형 私刑 사림파 士林派 107 60 사모 紗帽 사회신분 社會身分 309 104 사무역 私貿易 산골짜기집의 구조 342 130, 132 사민 私民 106, 107 산관 算官 110, 112, 124, , 128, 131 사복갑사 司僕甲士 산관(직) 散官(職) 63,66,68,73,80, 68 4부학당 四部學堂 44, 73, 74 81, 127 산부인과 産婦人科 사사노비 寺社奴婢 225, 228 376, 380 4색당론 四色黨論 111 《산서》 《産書》 376,379 산원 算員 사섬시 司贍寺 204, 225, 226 68 사손 使孫 250 《산음호적》 《山陰戶籍》 256, 257 사알 司謁 152 산의 散衣 302 사약 司鑰 산학 算學 152 124, 125, 135 사역원 司譯院 산행 山行 125, 135 94 사옹원 司甕院 살림집의 구조 337 68 사원장리 寺院長利 103 3공신 三功臣 99 사의국 司醫局 3공신의 중손 三功臣의 衆孫 374, 381 92 사자관 寫字官 68, 110 3공형 三公兄 145 사장 社長 197 3관 三館 74 사재감 司宰監 삼군총제부 三軍總制府 206 84 사재감 수군 司宰監水軍 134,206, 3반 三班 59

3의사 三醫司 371, 373, 374, 380, 381, 서리 胥吏 67,69,82,108,111,116~ 385 118, 121, 123, 137, 143 3첩반상 三楪飯床 329 서리직 胥吏職 66 삼한세족 三韓世族 106 서반 西班 55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 서반 경관 정직록관 西班京官正職祿官 377 83 삿갓 311 서반군직 西班軍職 68.90 상 裳 299, 301, 309 서반 실직 西班實職 83, 89 상고 商賈 187 서반 실직수 西班實職數 상급 지배신분층 上級支配身分層 서반 외관 정직록관 西班外官正職祿官 67, 69, 106, 114, 117, 120, 125, 127, 135, 83 152 서반체아직 西班遞兒職 67, 83, 118, 상류의 제택 上流의 第宅 341 128 상림원 上林園 서얼 庶蘖 78, 105, 108, 110, 114, 119~ 231 상민 常民 104, 108 121, 123, 125, 126, 133~136, 143, 151, 상복 常服 308, 309 154, 155 상서 象胥 서얼금고(법) 庶蘖禁錮(法) 129 121, 126, 상실 椽實 367 134 상약국 尙藥局 381 서얼자손 庶蘖子孫 68,69 상용식사 常用食事 330 서얼차대(법) 庶蘖差待(法) 52, 69, 상의원 尙衣院 68 121, 126, 133 서얼층 庶擊層 상의원노비 尚衣院奴婢 225 48 상인 常人 서원 書院 104, 108 44, 47 상장 喪葬 359, 364 서인 庶人 107 상정소 詳定所 서자 庶子 276 81 상직 賞職 103 서제 書題 142, 143 서청 西廳 상평창 常平倉 368, 369 347, 348, 352 상평창곡 常平倉穀 368 석 舃 299, 301 색리층 色吏層 149 석루조 石漏槽 350 색장 色掌 361 선군 船軍 197, 198 선남후녀 기재방식 先男後女 記載方式 생약포 生藥鋪 382 생원시 生員試 115, 121, 127, 134, 144, 284, 289 148 선상 選上 120.214.221 서까래 339 선상노(비) 選上奴(婢) 206, 214, 215, 서도 胥徒 143 221, 225 서류부가 婿留婦家 248, 254, 259, 281, 선상대립 選上代立  $219,221 \sim 225$ 291, 293 선상대립의 공인 選上代立의 公認 서류부가혼 婿留婦家婚 288 223, 224 서리 書吏 68, 112~114, 116~118, 13 선상대립가의 공정 選上代立價의 公定  $8 \sim 142.148$ 223

선상 입역 選上立役 218,225 속안 續案 204 선상 입역노비 選上立役奴婢 217 《속육전》 《績六典》 72,88 선상 입역노비의 수 選上立役奴婢의 數 솔거노비 率居奴婢  $208 \sim 212, 226,$ 214 227,232선상 입역제 選上立役制 214,217, 솔하노비 率下奴婢 209 송상문 宋尚問 218 76 선상의 폐 選上의 弊 215, 217 송익손 宋益孫 104 선상제의 모순 選上制의 矛盾 219. 수 綬 301,309 수가 隨駕 94 221, 222 선전관 宣傳官 70,84,88,90,91 수공 守公 366 수령 守令 67, 89, 90, 94, 96, 116, 117, 선차 宣差 137 선차방 宣差房 72 128, 140, 142, 143, 145~147, 151, 152 선화 善畵 수령취재 守令取才 67,118 124선회 善繪 수보로 繡甫老 307 124 수복 守僕 219 설인(자) 舌人(者) 129 섭산자 332 수성군 守城軍 243 성균관 成均館 73,74,94 수신전 守信田 97,98 성균관유생 成均館儒生 127 《수운잡방》 《需雲雜方》 326, 331, 성상 城上 215 334 성중관 成衆官 72,89,137 수의 獸醫 372 수재 水災 성중애마 成衆愛馬 86,89 357, 358, 364 수전패 受田牌 84,86,87 세공 歲貢 68, 120 세관(제) 世官(制) 수전품관 受田品官 85,86 97, 106 세록(제) 世祿(制) 97 수직 守職 97 세습적 천역자 世襲的 賤役者 170. 수창궁 壽昌宮 352 177 숙신옹주의 집 淑愼翁主家垈 348, 세신 世臣 107 349 세전 世傳 63, 100, 105 숙위군 宿衛軍 89~91 세족 世族 64,106 순자범 循資法 79 소격서 昭格署 125,132 순작 巡綽 94,96 소오자 小襖子 319 순장이소 巡將二所 137 소작농 小作農 50 수증계 水蒸鷄 333 소조 小俎 330 스란 膝襴 304, 307 소종 小宗 스란치마 膝襴裳 324,325 287 소천(고)의 小串衣 298, 304, 308, 습독관제도 營讀官制度 127 319 습의 襲衣 302 속곳 320 승문원 承文院 74속공노비 屬公奴婢 203, 204 승보시 陞補試 73, 74 속바지 297, 304, 308, 325 승재 僧齋 280, 293, 294 속성 續姓 67,115 승정원 承政院 117,139

시가지법 試可之法 118 313, 320 시식 施食 359, 361 악학도감 樂學都監 199, 202 시위대립 侍衛代立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 85 시위패 侍衛牌 85,87,243 259 안주요리 按酒料理 시정 侍丁 217, 219 332 신공 身責 208, 209, 213, 225, 229, 안중손 安中孫 76,77 230 안채 344,352 신공 납부의 의무 身貢 納付의 義務 압량위천 壓良爲賤 35, 42, 101, 102, 225 232 압마 押馬 신량역천 身良役賤 75, 105, 134, 233, 129 압물 押物 129 234 신량역천층 身良役賤層 액례 掖隷 37 152 신백정 新白丁 238, 239, 242 액마기 腋亇只→곁마기 신분개념 身分概念 액정서 掖庭署 83,152 105 신분이동 身分移動 106 액주름 腋注音・腋皺衣 296, 297, 303, 신분제사회 身分制社會 70 312, 315 신역 身役 145, 167, 173, 174, 181, 182, 약방 藥房 381 208 약부 藥夫 385 신진사대부 新進士大夫 144 약욕 藥浴 387 실직 實職 66, 79, 80 약재채취(법) 藥材採取(法) 377, 실행부녀 失行婦女 168 385 심약 審藥 약점 藥店 386 371, 385 십일조 什一租 약정 約正 96 123 10학 十學 49, 124 양가자제 良家子弟 125, 126, 128, 쓰개 308 132, 140 씨족(집단) 氏族(集團) 252, 253, 254, 양곡절약 糧穀節約 365  $274,287 \sim 289$ 양관 梁冠 309 씨족보 氏族譜 289 양록분전제 量祿分田制 97 씨족불부자 氏族不付者 61 양민 良民 108,110~111,121~123, 126, 141, 147, 172, 173 [0] 양반 兩班  $44 \sim 47,55,59,62,66,67,$ 70, 74, 75, 77, 78, 82, 84, 92, 96, 101, 102, 아산둔전 牙山屯田 103  $105 \sim 113, 118, 122, 123, 125, 128, 129,$ 아악서 雅樂署  $132, 136, 155 \sim 157$ 201, 202 아전 衙前 106, 116, 151 양반가문 兩班家門 62, 64, 65 악공 樂工 124, 149, 195, 201 ~ 203, 양반관료(제) 兩班官僚(制) 82, 86, 219, 221, 366  $97 \sim 99, 113, 114, 116, 117, 125, 128, 130,$ 악생 樂生 124 134, 152, 154 악학 樂學 124, 199, 202 양반관료체제 兩班官僚體制 55,58, 《악학궤범》 《樂學軌節》 306, 307, 59, 90, 114

양반관료층 兩班官僚層 72 양반관인 雨班官人 114 양반관직 兩班官職  $114 \sim 119, 121,$ 134, 135, 140, 148, 151 양반국가 兩班國家 67, 84, 106 양반귀족 숙위군 雨班貴族宿衛軍 92 양반병종 兩班兵種 88, 89, 95 양반서얼 兩班庶蘖 78, 106 양반수조지 兩班收租地 97 양반신분 兩班身分 45, 65, 84 양반유내직 兩班流內職 69 양반의 신분적 지위 兩班의 身分的 地 位 84 양반자제 兩班子弟 75,84,88~91 양반정치 兩班政治 113 양반 직업군 兩班職業軍 88 양반층 兩班層 60, 66, 109 양반 특수군 兩班特殊軍 95 양변문족 兩邊門族 292 양변적 방계가족 兩邊的 傍系家族 250, 254, 260, 261 양사언 楊士彦 136 양생음식 養生飮食 325 양성지 梁誠之 21, 28, 198, 208, 210 양수척 楊水尺 237, 238 양신분 良身分 82, 83, 104~106, 108 양인 良人 61, 66, 75, 78, 84, 88, 94,  $101, 104 \sim 106, 108, 109, 114, 134, 149,$ 150 양인신분 良人身分 108 양인자제 良人子弟 66 양인충 良人層 50 양자제도 養子制度 272 양잠인 養蠶人 219 양진당 養眞堂 353 양천교가 소생 良賤交嫁 所生 200, 233, 234 양천론 良賤論 51 양천 불명자 良賤不明者 105

양천신분제 良賤身分制 54, 159 양천제 良賤制 105,109 양첩자손 良妾子孫 68 양청 凉廳 352, 353 양현고노비 養腎庫奴婢 225 어숙권 魚叔灌 136 여공 餘貢 225, 226 여역 癘疫 358 여정 餘丁 21 여정위 勵精衛 95 여진학 女眞學 124, 125 역과 譯科 70, 124, 127 역관 譯官 64, 68, 110, 112, 119, 120, 123, 124, 128~130, 132 역노비 驛奴婢 203, 206, 207, 213 역노비형지안 驛奴婢形止案 207 역리 驛吏 146, 182 역승 驛丞 117, 141, 363 역자 驛子 180, 182, 231 역학 譯學 124~126, 129, 130 역학생도 譯學生徒 120,127 역호 驛戶 83 연리 掾吏 137 연호미법 煙戶米法 19 연화대 蓮花臺 199 염간 鹽干 181 염습의 斂襲衣 302, 304 염장 鹽醬 359 영문소속 營門所屬 152 영사 令史 137, 150 예빈시 禮賓寺 204, 215 오 襖 318, 319 5군영 五軍營 152, 153 오미자국 五味子 국 331 5복제 五服制 281, 282 5복친 五服親 81, 252, 281 오시 烏柿 327 5위 五衛 90, 91, 137, 153 오조룡보 五爪龍補 302 옥의 獄醫 11,371

온돌 10, 325, 330, 353 유교적 직역관 儒敎的 職役觀 40 왕자과전 王子科田 99 유녀 遊女 193 왕토사상 王土思想 96 유복친 有服親 252 왜학 倭學 124 유사체아직 有仕遞兒職 92 왜학훈도 倭學訓導 126 유역전 有役田 85 외거노비 外居奴婢 208, 210~212, 유외직 流外職 68.83 226. 228~232 유음자손 有蔭子孫 169,170 외노비 外奴婢 207 유의 儒醫 373, 374 외방노비 外方奴婢 209,217,222 유이민 流移民 29~31 외방노비의 선상제 外方奴婢의 選上制 유일 遺逸 70 유자광 柳子光 134 220 외방엄격매자규찰법 外方掩骼埋胔糾察 유품직 流品職 72 法 365 유향소 留鄕所 67, 115, 144 외아전 外衙前 143, 175 6방 六房 145 외역전 外役田 66, 85, 97, 115, 146 6방층 六房層 149 6방향리 六房鄕吏 113,145 요동 潦東 338 117, 137, 139 요동 영송(문제) 遼東迎送(問題) 6조 六曹 31. 32 육포 肉脯 329 요무 妖巫 193, 194 6학 六學 124 요역 徭役 83, 145 윤사균 尹士均 104 윤사로 尹師路 《용재총화》《慵齋叢話》 64 103 윤필상 尹弼商 103,104 욱실 燠室 353 움집 338 윤회봉사 輪回奉祀 262,271 원각사 조라치 🏻 🖺 豊寺 照羅赤 219 율과 律料 124,127 원공 元貢 225, 226 율관 律官 68, 110, 112, 124, 128, 131 원령 圓領 302, 312, 313 율학 律學 124, 125, 135 원방한생 遠方寒生 142 율학생도 律學生徒 120, 126, 127 원삼 圓杉 297 은사미제 恩賜米制 98 원악향리 元惡鄕吏 66,146 음서(제) 蔭敍(制) 62,97,105 원악향리처벌법 元惡鄕吏處罰法 115, 《음식디미방》 《飲食知味方》→《규곤 144, 147 시의방》《閨壺是議方》 원유관 遠遊冠 298, 301 음양과 陰陽科 70, 124, 127 《원육전》 《元六典》 음양풍수학 陰陽風水學 124 72.80원점 圓點 94,127 음양학 陰陽學 124, 125 원총 原總 24, 25 음자제 蔭子弟  $72 \sim 74, 79, 127$ 월령의 月令醫 11,371 음자제취재 蔭子弟取才 72,73,141 위원 渭原 125, 126 의 衣 299,301,309 의과 醫科 70, 124, 127 위항문학 委巷文學 113 유경선복흑두법 劉景先服黑豆法 336 의관 醫官 68, 110, 112, 119, 120, 123, 유골권안 遺骨權安 252 124, 128, 131, 132

의기 醫妓 376 의녀 醫女 200~203, 219, 370, 376 의녀제도 醫女制度 11,372,375,384 의녀훈도관 醫女訓導官 375 의례음식 儀禮飮食 332 《의방유취》 《醫方類聚》 372, 379, 380 의빈계 儀賓階 81 의사 醫司 381, 383 의생 醫生 126, 131, 364, 373, 385 의생방 醫生房 375 의서습독관제 醫書習讀官制 372 의서습독법 醫書習讀法 374 의서편찬 醫書編纂 378, 382 《의약론》 《醫藥論》 373 의약활인법 醫藥活人法 371, 373 의원 醫院 371, 383, 385 의원 醫員 131, 381 의정부 議政府 89, 117, 137, 139, 204 의창 義倉 11, 360, 368, 369 의창곡 義倉穀 359, 360, 368 의학 醫學 124, 125, 131, 384 의학교수 醫學敎授 126, 371, 380 의학교육 醫學敎育 11, 373, 376, 382 의학생도 醫學生徒 120, 127, 131, 380 의학원 醫學院 12,374,381,384 이과 吏科 70 이과취재 吏科取才 138 이교 吏校 123, 154 이득전 李得全 76, 77 이무 吏務 63 이문습독관 東文習讀官 127 이상형의 집 理想型의 집 340, 354 이서 吏胥 137 이성계 李成桂 89, 98 이성귀족 異姓貴族 62 이순명 李順命 76, 77 이순몽 李順蒙 104 이시애 李施愛 107 이엄 耳掩 308 이역 移役 219, 220

이유태 李惟泰 339 이의 裏衣→속곳 이전 吏典 113, 117, 121, 137, 143 이전거관인 吏典去官人 141 이족 吏族 108 이직 吏職 61, 70, 108 2층건물 二層建物 345, 352, 353 이태원 利泰院 362,363 《이태조호적》《李太祖戶籍》 이학 吏學 124 익군 翼軍 28 익랑 翼廊 346, 348, 352 익선관 翼善冠 298, 302 인구수 人口數 2, 29 인구이동 人口移動 3.29 인보법 隣保法 15 인청 人丁 83 일부다처제 一夫多妻制 257 일수 日守 197 1실 1동제 一室一棟制 354 일천즉천 一賤則賤 105, 107 입관보리법 入官補吏法 입모 笠帽 318 입식형 상차림 立式型床차림 331 입역 立役 214 입역노비 立役奴婢 225 입직 入直 94

#### [ㅈ]

자급 資級 94 자녀균분상속 子女均分相績 자손보 子孫譜 283, 289, 293, 294 자연재해 自然災害 357 17, 24, 29 자연호 自然戶 자영농 自營農 50, 101 자의 紫衣 312 자학 字學 124 작정 作工 18 작청 作廳 67

잔반 殘班 109 禁錮法 255 잔잔호 殘殘戶 18,19 재살률 宰殺律 241 잡과 雜科 66, 110, 115, 120, 124, 126~ 재상지증 宰相之宗 64 128, 135, 148 재인 才人 196, 197, 237~239, 242~ 잡과편 雜果片 332 244 잡류 雜類 154, 155, 186 재지노비 在地奴婢 209 잡색군 雜色軍 27, 145, 231 재지사족 在地士族 33 잡색역 雜色役 174 재지호족군 在地豪族群 55 잡업인 雜業人 124 잿간 344 잡역 雜役 저고리 赤古里 297, 304, 321~324 144, 145 잡직 雜職 82, 114, 121, 124, 152 적녀 嫡女 81 잡직계 雜職階 82 적몰노비 籍沒奴婢 206,207 잡직 기술관 雜職技術官 149 적삼 赤衫 304, 308. 잡직취재 雜職取才 125 적의 翟衣 296, 304, 305, 308 잡척 雜尺 180 적의제 翟衣(的衣)制 305 적자 嫡子 잡학 雜學 49, 120, 124 81.92 잡학취재 雜學取才 110.124 전가사변률 全家徙邊律 31 장교 將校 108,111,121,152~153 전객 佃客 50 장교층 將校層 153 전결수 田結數 3,22,33 장남봉사 長男奉祀 262 전농시 典農寺 203, 204, 206, 207 장례원 掌隷院 204, 205, 223 전령무관 傳令武官 91 장리 長利 103, 104, 168, 169, 170 전리 典吏 137 장번 長番 87,92,94 전립 戰笠 298, 311 장번친병 長番親兵 91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正都監 35, 36, 42 장삼 長衫 전복 戰服 313 296, 304, 305 장악서 掌樂署 199, 201, 202 전생서 典牲署 329 장악원 掌樂院 199 전시 殿試 127 장의 長衣 297, 304, 308, 309, 312, 317, 전시과 田柴科 116,119 320, 322 전악서 典樂署 201,202 장용대 壯勇隊 231 전운노비 轉運奴婢 206 장의국 掌醫局 374, 381 전의감 典醫監 125, 126, 131, 135, 375, 장인 匠人 219,221 381, 382 장저고리 長赤古里 306.324 전장 田莊 147 장흥고노비 長興庫奴婢 219 전정 田丁 250 재 齋 253, 269 전제개혁 田制改革 101 재가실행녀 再嫁失行女 69 전조의 착취 田租의 搾取 99 333 재랑 齋郎 366 전통술 傳統酒 쟁첩 (반찬그릇) 330 전함품관 前銜品官 147 재가녀 再嫁女 168, 169, 170 정군 正軍 23 재가녀소산자녀금고법 再嫁女所産子女 정도전 鄭道傳 69

## 404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정방 正房 346, 352, 353	종계 宗契 287
정병 正兵 87, 197, 198	香량 從良 200, 201, 231, 233, 234, 230
정병 精兵 90	종모법 從母法 36, 233, 234
정수 丁數 23	종법 宗法 287
정안 正案 204	종법제도 宗法制度 287, 288
정액제 定額制 174,175	종부법 從父法 232~234
정액호 定額戶 20	종부위량법 從父爲良法 53
정약용 丁若鏞 25	종약색 種藥色 382
정역호 定役戶 20	종약전 種藥田 382
정응두 丁應斗 316	종자 宗子 287
정인지 鄭麟趾 103,104	종족 宗族 287,288
정자관 程子冠 311	● 予 次次 201,200 季季 空由 287
정취 正寢 346, 348, 353	종중 宗中 287 조치 (沙藤) 222 224
利복 祭服 308	종천 從賤 232, 234 종친 宗親 81, 88, 102, 169
제국 宗版 300 제생 濟生 371	종천계 宗親階 81
제생원 濟生院 200, 375, 381	· 전계 · / / / / / / / / / / / / / / /
제용감 濟用監 198	좌교 至貞 161,160 좌식형 상차림 坐式型床차림 330
제중점 個用監 190 제주 3읍 濟州三邑 26	주거양식 住居樣式 330
제단 第宅 344,348	
	주사 廚舍 344 주안상 酒案床 331
조관 朝官 151	《주자가례》 《朱子家禮》 274, 275,
조도 早稻 326	278, 279, 289
조득림 趙得琳 76	주자사창모미법 朱子社倉粍米法 359
조말생 趙末生 104	주자학 朱子學 65,144
조복 朝服 308,309	주진군 州鑛軍 87
조성 趙成 76	주현군 州縣軍 153
조신 曺伸 136	주호 主戶 17
조업 祖業 263	중단 中單 299, 301, 309
조업전 祖業田 250	중박겨 中朴桂 332
조정 助丁 89,95	중서 中庶 136
조치보(찌개그릇) 330	중앙 숙위군 中央宿衛軍 91
조홍시 早紅柿 327	중앙집권적 관료제 中央集權的 官僚制
季 族     292	69
季보 族譜     45, 47, 108, 282	중인 中人 48, 66, 67, 105, 106, 109,
季     族中     287       3     5     6	110, 155~159
족친 族親 292	중인계층 中人階層 69
족친위 族親衛 84,92,95	중인문화 中人文化 113
존본취식 存本取息 103	중인층 中人層 48, 49, 108
종 宗 287	중인통청운동 中人通淸運動 133

중치막 中致莫 298 질역 疾疫 357 증편 蒸片 332 집현전 集賢殿 90 지관 地官 110, 112, 119, 124, 128, 131, [ス] 132 지도 志道 124, 149 차비노 差備奴 지록 地祿 151  $214 \sim 217$ 지리학 地理學 124 차조도 次旱稻 326 지방 의료기구 地方醫療機構 385 착호 捉虎 94 찬물요리 333 지배신분층 支配身分層 59,69,108 지인 知印 137,150 찰벼 326 지장전 紙匠田 97 참하관(직) 參下官(職) 71,117,119 창기 娼妓 195, 199, 202, 203, 219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50 지주제 地主制 창덕궁 昌德富 45 351 직금공작흉배 織金孔雀胸背 창의 氅衣 313 299 직금단 織金緞 297 창제 倉制 368 직령 直領 297, 309, 312, 315 《창진집》 《瘡疹集》 379 직령의 直領衣 채곽 菜藿 303 362 직사 職事 97 채무노비 債務奴婢 104 직역 職役 35, 37~39, 83, 84 채소요리 菜蔬料理 직전(법) 職田(法) 67, 68, 87, 98, 99, 채소 저장범 菜蔬貯藏法 333 채약 採藥 119, 128, 132 386 직전세 職田稅 99 채약정부 採藥丁夫 377, 385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87,98 처변전래 妻邊傳來 250 진곡보충 賑穀補充 365 처첩분간법 妻妾分揀法 134 진대 賑貸 처첩분변 妻妾分辨 359, 360 248 진대법 賑貸法 369 천계혈통 賤系血統 77 진무 鎭撫 150 천릭 天翼 295, 314 진사 進士 127, 128, 141 천문관 天文官 110, 112, 119, 124, 128, 진사시 進士試 115, 121, 127, 134, 144, 131 148 천문학 天文學 124 천은학습독관 天文學習讀官 127 진장 鎭將 153, 154 진제경차관 賑濟敬差官 361,367 천민 賤民 376 진제장 賑濟場  $362 \sim 364, 368, 371$ 천신분 賤身分 82,104,106 진척 津尺 천역 賤役 149 180, 182 진황전 陳荒田 240 천인 賤人 66, 88, 100, 104, 106, 109, 진휼 賑恤 124, 134, 149, 157, 158, 160, 198~203 359, 360 진휼곡 賑恤穀 360, 361 천인의 구성 賤人의 構成 195 진휼사목 賑恤事目 361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120, 133, 134, 232 진휼장 賑恤醬 360, 361 진휼청 賑恤廳 368, 369 천첩자손 賤妾子孫 68,113

## 406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천호 千戶 150	336
첨리 添里 304	취재 取才 95
첨설직 添設豫 66, 73, 114	측간 廁間 344
첨위 僉尉 81	치마 赤ケ 296, 297, 304, 308
칩리 帖裏 297, 302, 309, 312, 314, 315	치부법 致賻法 365
첩자손 승중자 妾子孫承重者 94	치사 致仕 71
청근재식 菁根栽植 367	치상 治喪 278
청반 淸班 120	치종의 治腫醫 372
청심원 淸心圓 382, 383, 386	치종청 治腫廳 380
청요직 淸要職 70, 71, 74, 82, 133	친군위 親軍衛 84,89,91
체아록 遞兒祿 117, 119, 130, 139, 140,	친시 親試 100
143	친영 親迎 259, 261
체아직 遞兒職 68, 73, 83, 89, 91, 92,	친잠례 親蠶禮 307
95, 96, 117, 119, 128, 132, 139, 143, 370,	친진 親盡 81
374	7과 七科 70
초가 草價 99	7학 七學 49
초가삼간 草家三間 344	침구 鍼灸 372,376
초관 哨官 152	침구법 鍼灸法 376
초구 貂裘 320	침구의 鍼灸醫 372
초립 草笠 311	침구전문법 鍼灸專門法 379
* -1 -tttt: 000	/ 引 フロの団 対 2     //社 4   四 / 年 年   970
초막 草幕 338	《침구택일편집》 《鍼灸擇日編集》 379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침루 寢樓 352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침루 寢樓 352 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침루 寢樓 352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침루 寢樓 352 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b>[ㅋ]</b>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침루 寢樓 352 청간청척자 稱于稱尺者 162,180 <b>[ㅋ]</b> 카스트 (Caste) 109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침루 寢樓 352 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b>[ㅋ]</b>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서 崔湑 76,77	침루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b>[ㅋ]</b>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서 崔湑 76,77 최윤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침루 寢樓 352 청간청척자 稱于稱尺者 162,180 <b>[ㅋ]</b> 카스트 (Caste) 109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산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침루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b>[ㅋ]</b>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b>[ㅌ]</b>
초임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서 崔湑 76,77 최윤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嗣都監 208	침투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키]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E] 타각부 打角夫 129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서 崔湑 76,77 최어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刷都監 208 축첩제 蓄妾制 133	침투 寢樓 352 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키]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E]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서 崔湑 76,77 최윤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刷都監 208 축첩제 蓄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침투 寢樓 352 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ヲ]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E]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사 崔渭 76,77 최윤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刷都監 208 축첩제 蓄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충순위 忠順衡 73,84,90~92,94~96	침루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ㅋ]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ㅌ]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털릭→첩리 帖裏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사 崔渭 76,77 최사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嗣都監 208 축첩제 蓄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중순위 忠順衡 73,84,90~92,94~96 충의위 忠義衛 73,84,90~93	침투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키]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匡]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털릭→첩리 帖裏 토관 土官 82,108,111,113~116,123,
초임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산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嗣都監 208 축첩제 蕎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충순위 忠順衡 73,84,90~92,94~96 충의위 忠義衛 73,84,90~93 충재 虫災 357,358	침투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키]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匡]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털릭→첩리 帖裏 토관 土官 82,108,111,113~116,123, 149,374,386
초입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離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岦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윤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嗣都監 208  축첩제 蓄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충순위 忠順衡 73,84,90~92,94~96  충의위 忠義衛 73,84,90~93  충재 虫災 357,358  충찬위 忠贊衛 73,84,90~92,94,96	침투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月]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E]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털릭→첨리 帖裏  토관 土官 82,108,111,113~116,123, 149,374,386 토관계 土官階 82
초임사(로) 初入仕(路) 69,79 초제 醮祭 132 초피 貂皮 318 초학의 初學醫 376 최립 崔忠 76,77 최산두 崔山斗 76,77 최산덕 崔潤德 82 추곡 秋穀 358 추국 推鞫 363 추쇄도감 推嗣都監 208 축첩제 蕎妾制 133 출번일 出番日 96 충순위 忠順衡 73,84,90~92,94~96 충의위 忠義衛 73,84,90~93 충재 虫災 357,358	침투 寢樓 352 청간칭척자 稱干稱尺者 162,180 [키] 카스트 (Caste) 109 쿠리매 295,318,323 [匡] 타각부 打角夫 129 탁음자 托蔭者 71 《태산요록》 《胎産要錄》 379 털릭→첩리 帖裏 토관 土官 82,108,111,113~116,123, 149,374,386

토관(설치지역) 土官(設置地域) 149, 150 토담집 338 토성 土姓 67,115 토장 土醬 350 토지겸병 土地兼倂 102 토착음식 土着飲食 332 토호 土豪 66,344 통사 通事 129 통진 通津 103 투속 投屬 220,221 트인 디자형 집 341 특별(구제)대책 特別(教濟)對策 365, 366

#### [五]

판적사 版籍司 359 판정백성 判定百姓 233 팔작지붕 350 패 佩 301 패관잡기 《稗官雜記》 136 패랭이 311 패옥 佩玉 299,309 편문현상 偏文現象 82 편성호 編成戶 22 편호방식 編戶方式 16~20 평량자 平凉子 311 평로위 平虜衛 87 평민 平民 104, 106, 108, 123, 126, 141, 한잡인 閑雜人 154, 155  $164, 172, 176 \sim 179$ 평민층 平民層 50,53 평상인 平常人 108 평안도 平安道 27, 28, 115, 149~151 평양 平壞 125, 126, 149 폐슬 蔽膝 299, 301, 309 포교 捕校 155 포납화 布納化 225 품계 品階 94

품관 品官 142 풍수재 風水災 367 풍수지리설 風水地理說 131 풍재 風災 357

#### [ㅎ]

하경덕 何敬德 363 하곡 夏穀 259 하급 지배신분층 下級支配身分層 4,  $67, 69, 106, 111, 112, 114 \sim 155$ 하륜 河崙 98,103 하번일 下番日 94 하3도 下三道 98,104 하장자구기법 何長者救飢法 363 하피 霞帔 304 학례강 學禮講 66, 78, 115, 144 학주 貉紬 323 한건 韓健 210, 227 한과 韓菓 332 한년매매 限年賣買 102 한량 閑良 115, 150 한량관리 閑良官吏 84~86 한삼 汗衫 303, 304, 308, 312, 317, 319 한성(부) 漢城府 22, 23, 363, 364, 371, 385 한성부 낭청 漢城府郎廳 371 한성 5부 漢城五部 26 한옥 韓屋 354 한재 旱災 257, 358, 367 한전 閑田 240, 244 한증소 汗蒸所 383,384 한증승 汗蒸僧 384 한증욕 汗蒸浴 387 한품 限品 68, 82, 90, 94, 96 한품서용 限品敍用 119, 121, 128, 135 한학 漢學 124, 125, 127 한학교수 漢學敎授 126

#### 408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한학훈도 漢學訓導 126 허도 許衛 375, 384 함경도 咸鏡道 헛간 344 89, 115,  $149 \sim 151$ 해도의원 海道醫員 혁거사사노비 革去寺社奴婢 203~ 11, 371, 380 해주 海州 26, 27 207 핵법 覈法 25 현감 縣監 151 행랑채 341 현관 顯官 73, 76, 108, 121, 134 행상 行商 187, 188 현령 縣令 117 행장제 行狀制 현족 顯族 106 241 행직 行職 97 현주 縣主 81 《행포지》《杏浦志》 현직 顯職 326 68 향교 鄕校 75, 207 혈거 穴居 338 향교생도 鄕校生徒 75, 231, 366 협3년 挾三女 251 향리 鄕吏 61, 66, 67, 69, 83, 105, 108, 협7녀외손 挾七女外孫 251 109, 111, 112, 114, 115, 120, 131, 123, 126, 협호 挾戶 17 128, 132, 139~141, 143, 149, 150, 153, 형방 刑房 145 154, 170, 197, 199, 231 형살 刑殺 107 향리가문 鄕吏家門 형전 刑典 62 107 향리성 鄕吏姓 115 형조 刑曹 125, 127, 204, 205, 220, 223, 향리 억압정책 鄕吏抑壓政策 224 114, 115 형조도관 刑曹都官 205 향리의 농간 鄕吏의 弄奸 혜鞋 309 220, 221 향리의 3정 1자 鄕吏의 三丁一子 혜민국 惠民局 370, 375, 380, 381, 384, 66, 120, 140, 148 386 향리자제 鄕吏子弟 78 혜민서 惠民署 125, 126, 131, 135, 368, 향약 鄕藥 45, 47, 377~379 370, 375, 382, 383 《향약고방》《郷藥古方》 호 戶 2, 17 377 호구 戶口 향약서 鄕藥書 377 2, 18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호구수 戶口數 2,22 372, 378 호구정책 戶口政策 28 《향약집성방》《郷藥集成方》 372, 호당구수 戸當口數 378, 379, 380 호방 戶房 145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 372, 호복 胡服 295 378 호분위 虎賁衛 87 《향약혜민경험방》《郷藥惠民經驗方》 호수 戶數  $18, 19, 23 \sim 25, 28$ 377, 385 호익위 虎翼衛 87 향역 鄕役 호장 戶長  $115, 141, 144 \sim 149$ 113, 144, 145 향의귀순성주 向義歸順城主 호장층 戶長層 61, 149, 153 60 향족 鄕族 109 호적 戶籍 2, 25, 38, 42, 61, 77, 143, 향촌 鄕村 145 32 향호 鄕戶 83 호적법 戶籍法 2, 23, 28, 38, 40

호조 戶曹 125,198 화학 畵學 124,125 호족 豪族 56,153 환과고독 鰥窠孤獨 101 호족계열 豪族系列 61 환량 還良 101 호족세력 豪族勢力 60,61 횐자 還上 359,361 호수 好(胡)袖 318,323 환퇴 還退 102 호수소오자 好袖小襖子 319 활인서 活人署 11, 131, 368, 370, 384 호총 戶總 17,22 활인소 活人所 383 호패법 號牌法 15.28 활인원 活人院 363, 364, 375, 381, 383, 혼인 거주규칙 婚姻居住規則 258~ 385,397 황각 黃角 362,367 260 혼인규칙 婚姻規則 247 황랍 黃蠟 336 혼인형태 婚姻形態 247 황무지 개간 荒蕪地開墾 102 홀 笏 309 황수신 黃守身 72, 103, 104, 229 홍길민 洪吉旼 212 황자후 黃子厚 379 흉문관 弘文館 70 황주 黃州 125,126 흥원삼 紅圓杉 305 황철신 黃哲身 72 홍윤성 洪允成 103 황해도 黃海道 26,27 홍패 紅牌 127 황희 黃喜 72 홑저고리 汗衫 317 회령 會寧 149 화령 和寧 149 회사 繪史 124,149 화사 畵史 회장저고리 303 124화원 畵員 68, 110, 113, 124, 128, 131, 효령대군 孝寧大君 104 132 후수 後綏 299 화재 火災 357, 358, 364 훈구파 勳舊派 60 화주 和州 149 휼양전 恤養田 97,98 화직 華職 122, 127 흉배 胸背 296, 304, 305, 309 화척 禾尺 196, 197, 237 ~ 239, 242, 흉황 凶荒 365,366 243 흑립 黑笠 311 화포군 火砲軍 150 흑창 黑倉 369

## 집 필 자

개 요이수건
I.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1. 인구동향이수건
2. 신분의 구분이범직
3. 양 반이성무
4. 중 인신해순
5. 양 인
6. 천 인 전형택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1. 가족제도 최재석
2.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박성실
1) 의생활박성실
1) 의생활    박성실      2) 식생활    윤서석
1) 의생활       박성실         2) 식생활       윤서석         3) 주생활       신영훈

# 한 국 사

25

##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1994년 8월 2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4년 8월 10일 발행 (No. 94-14-7-7)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